

[박병석 의원 정책자료집]

2018년도 외교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목 차]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초청 강연
- “북미관계와 북핵전망” 녹취록 및 강연자료
- 한국, 일본, 독일 방위비분담금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 주한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워싱턴 싱크탱크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 (국회입법조사처)
- 해외 주요국 행정직원 제도 운영현황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 병 석** (대전 서갑)

[박병석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문정인 교수(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초청강연

‘북미 관계와 북핵 전망’ 녹취록

2018.09.07

▲ 박병석의원 인사말

이번에 대통령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반도의 비핵화문제, 북미관계의 물꼬를 텃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화의 원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임테이블과 로드맵 중에서 비핵화의 시간표가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제시됐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로서는 절체절명의 가장 관건적 시기다. 이 시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멈칫거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같이 가야하지만 때로는 서로 촉매작용을 하면서 선순환의 작용을 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내외신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상 현실로서 많은 증거를 해 보였던 문정인 교수님께서 오늘 해안 있는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은 우선 문교수님께서 약30~40분에 거쳐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응답을 10~20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정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 문정인교수 본 강연말씀

박병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해를 좀 받겠습니다. 어제도 홍익표의원 하고 북콘서트를 같이 했거든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오니까 이틀 연속으로 국회 와서 얘기해서 오해를 일으킬 거 같은데. 원래 북콘서트도 오래전에 특사단 방북하기 오래전에 결정됐고 박병석 의원님이 전화하셔서, 제가 지난주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 다녀온 다음에 하시죠, 하셔서 날짜를 정한 게 오늘인데 그제 특사단이 다녀오고 특사단 방북과 관계가 없고,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보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연세대 명예교수로 하는 것이니까 참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녀오신 특사단 분들과 충분한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난주 워싱턴에 거기 있는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쪽의 분위기는 전달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특사단 방북결과는 큰 의미 있죠. 지난 3월 5일, 6일 방북했던 때와는 상당히 성격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6일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가져왔던 6개의 합의사항은 정말 사변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이었죠. 4월말까지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 정상 간의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비핵화의 의지가 분명해질다, 군사적 위협이 없고 체제의 위협이 없으면 왜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는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김정은 위원장이 했고 그다음 4번째로는 미국하고 대화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쪽에서 분명히 전달했고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만약 대화가 지속되고 하면 우리가 남에 대

해서 핵이나 재래식 위협을 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이 전략무기 전신배치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게 되는 걸 분명히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단 교환문제가 있는데 그때 상황기초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측이 합의한 게 정말 혁명적인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4개항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것은 상당한 큰 의미가 있지만 3월에 비해선 비중은 덜하다 라는걸 먼저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복기를 해야 될 거는 다시 한 번 판문점선언을 볼 필요가 있죠. 1조는 기본적으로, 서문은 그겁니다.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 있어선 안 되고,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천명하고 1조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 정상화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산가족 재상봉문제라든가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문제, 동해선 경의선 철도 근대화하는데 남북이 공동 연구하기로 한 것이 1조에 해당되는 것이고, 2조의 경우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하자, 단계적 군축을 하자, 그러면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로 만들자, NLL 서해 수역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하늘과 바다 땅 전역에 걸쳐 소위 적대행위 중단해 나가자는 게 2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3조가 결국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자, 그리고 종전선언 끝낸 다음엔 평화협정 또는 조약, 3자나 4자가 평화조약이나 협정을 추동해나가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자, 라는 게 3조1항에 해당되는 거고, 2항에 해당되는

게 바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 만드는 공동 목표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국제공조를 한다, 라고 하는 게 3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가을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4월 27일 채택된 판문점선언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열렸습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도 판문점 선언과 상당히 맥이 같습니다. 1조에선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 시작한다는 걸 분명히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모색해나간다는 거에 두정상이 합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유해의 발굴 및 송환을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4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선언이 가진 특징은 시작을 우선 어디서 시작하느냐, 새로운 관계, 남북관계, 북미 관계를 새롭게 정상화시킨다는데 방점이 주어져 있고, 두 번째는 판문점선언 같은 경우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단계적 군축, 평화지대 구축 요런 식으로 나가는데 싱가포르 선언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거예요. 평화체제라 함은 우리가 헛갈리는 게, 평화체제라는 건 학술적 용어로는 평화를 만들고 유지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 절차를 통칭해서 평화체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조약도 들어가고 선언도 들어가고, 성명도 들어가고, 합의도 들어가고 다양한 게 들어가면서 평화로운 상태를 담보해주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을 평화체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항구적 평화체제

라는건 쉽게 얘기해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서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평화체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종전선언, 평화체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 그리고 3조에 대부분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상당히 북-미간 관계를 어렵게 하는 한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결국에 완전한 비핵화 하기 전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적대적 관계 청산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미국같은 경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동시적으로 연동돼있기 때문에 비핵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동시적으로 추동하자는 게 미국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선언은 모두 총론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각론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우리 남-북간에는 1조와 2조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각론에서도 원만한 진전이 이뤄졌지만 싱가포르선언은 총론 좋은데 각론에서 문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지난 7월 7일, 8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하려고 했을때 결국 방북했고 그 결과에 대해 상당히 미-북간에 불협화음이 생겼죠. 북측은 소위 gangster-like, 강도같은 요구를 했다, CVID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신고니 사찰이니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 일방적인 것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방북은 성공적으로 보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쪽 보면 미-북 사이 기본적 접근방법 차이가 있었어요. 싱가포르 선언 통해 추스리고 가려고 했지만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건 우선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대통령도 누차 얘기했지만 all-in-one, 일괄타결하자고 하는게 상당히 강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점진적 해결하자는데 강한 거거든요.

두 번째 미국과 북한의 기본 차이점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완성이 지속되는거 같은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선포기 후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폐기하고 좋은 행동을 보이면 그 다음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북한입장에서는 그거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행동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동시 교환하자는 거예요. 동시교환을 하자는 건 그럼 뭘 의미하느냐, 비핵화를 놓고 보자.

우선 첫째 시작은 동결로 시작해요. 그다음에 미국 요구하는 대로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물질, 핵탄두, 탄도미사일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한 것에 대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에 들어가는 신고와 사찰 단계가 있어요. 신고와 사찰단계가 끝나게 되면 검증의 범위가 설정되게 되고 구체적 검증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검증의 결과로 폐기를 하고. 그리고 폐기가 끝나면 재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제사회 많은 관심 갖는 것, 즉 핵무기 없애는 게 핵기술, 시설, 핵폭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머릿속에 가진 핵과학자, 핵기술자들에 대한 conversion문제, 전환문제다.

이런 게 다 돼야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불가역적 폐기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북 입장에선 이것이 단계마다 미국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과 국제사회가. 근데 북한이 얘기하는 동시교환, 행동대행동원칙이라는 동시교환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하자는 건데, 미국의 입장은 그거 못 받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가령 2007년 2.13 합의로 3단계 폐기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1단계서 영변 핵시설을 봉인·폐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사찰할 수 있도록 하겠다, 2단계에서는 불능화시키겠다, 3단계에서는 검증가능한 폐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2단계에서 결국 파국이 생겨서 진전이 없었던 건데요. 미국이 생각할 때는 북한이 단계별로 설정해놓고 먹튀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서 살라미 전술이라 얘기하는데, 단계별로 해서 북이 받을 건 받고 더 이상 협력하거나 호응해오지 않으면서 판이 깨진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괄타결하자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두 번째, 북이 먼저 proactive하게 선제적으로 폐기, 실질적 과정을 가면 미국이 보상해주는데 북 입장에선 미국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동시 교환하자는 것. 이게 그 문제고, 세 번째 미국과 북한사이에 계속 문제가 됐던 거는 시간표 문제, timetable, 지금도 볼튼 보좌관같은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1년 이내에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얘길 하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임기까지, 2021년 1월까지 북한이 핵 폐기하기로 했다는 얘기 했는데 북한 입장에선 그거에 대한 분명한 commitment 해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라고 하는 게 북한은 열린 시간표인거고 미국은 상당히 타이트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점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거였거든요. 거기에 더 나오는 얘기는 미국은 front-loading 북이 가진 핵물질, 특히 핵탄두 같은 것을 선제적으로 20, 30개 또는 전부를 반출해서 폐기하는 그런 요구를 미국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북에선 그걸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짧은 시간, 그니까 앞으로 2년 반이라는 시간 내에 비핵화한다고 하면, 결국 그런 식의 front-loading과 같은 형식의 선제적인 핵무기의 폐기 같은 것도 북에서 고려해야 그 시간표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런 게 있는거 같아요. 북한은 우리 심리학 용어로 relative deprivation,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거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다, 이번에 특사단이 갔을 때 2/3 이상 폐기했기 때문에 사용 불가하다라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했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설도 전 북한에 1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완전폐기했다, 발사대도 상당부분 폐기했다, 미군 유해도 55구 넘겼다. 북으로서는 자기들이 상당히 많은 성의를 보였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북의 입장인거 같고. 미국 입장은 일종의 인지부조화가 있는거 같아요. 일종의 cognitive dissonance.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이건 미국 외교사에 유래가 없는 거다. 그 정도 미국에서 대접을 해줬으면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 조치들을 좀 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럼 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았냐 하면 거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북한이 했던 풍계리, 동창리 건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핵활동에 대한 현재적 동결을 의미하는

거라고 미국에선 보는 거예요. 그니까 미래의 핵에 대한 현재적 동결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탄도미사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폐기가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은 미래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미국은 현재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도 북-미간 차이를 가진다는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저는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교착상태에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죠. 지금 미국입장은 ok, 판문점 선언에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지금 북이 동결하고 있는 거는 인정한다, 그럼 동결다음에 하는게 신고와 사찰이다. 신고와 사찰하라. 아마 폼페이오장관이 7월초에 방북했을 때도 신고와 사찰을 강력히 요구했던 걸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에선 답하지 않는 거거든요. 북에서 얘기하는 건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간 신뢰가 있었을 때 신고, 사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평행선을 상당히 그어왔어요.

미국입장에서는 처음에 작년 하반기, 금년 초만 해도 트럼프대통령이 ending the war, 한국전 끝내겠다는 말을 수시로 써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 실무자 간에서도 로드맵을 얘기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종전선언문제가 북미관계 개선이나 북핵협상에 있어서 걸림돌이 돼버린거예요. 제가 지난 주 워싱턴 가서 Atlantic Council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많은 미국 분들이

이런 주장 하세요. 종전선언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 북한이 분명 주한미군 철수주장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한미동맹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종전선언을 먼저 준다는 게 말이 되냐, 동시에 주는 것도 어렵다. 북한이 신고사찰 한 다음에 그리고 상당히 핵문제 진전 있는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거 같아요.

제가 그 때 Atlantic이라는 저널하고 인터뷰를 했고, 거기서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해요. 기본적으로 우리정부가 생각하는 건 정치적이고 상징적이고 나중에 평화조약이나 협정을 맺으려할 때 그 서문에 해당되는 것을 종전선언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것도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에 정말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하자라고 하는게 1조에 해당되는 거고. 2조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남북한, 전쟁이 종식되면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적대관계라고 하는 건 남북한과 북미간이니까 남북,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갑자기 종전선언을 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없는 상태가 되면 혼란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세 번째로 뭘 강조하냐하면, 평화 협정 또는 조약 체결시까지 기존 정전협정 유지시키고 그래서 군사분계선도 유지하고 유엔군 사령부도 유지하고, 중립국 감시위원단도 유지한다는 단서조항다는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게 결국에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동시켜 나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정부가 종전선언을 자꾸 올해 안에 하자고 강조한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 매체와도 인터뷰하면서 금년 내에 종전선언하면서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겠다고 할 때 종전선언의 의미는 이런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상징적 선언을 하고 그것을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강한거 같아요. 종전선언 채택하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게 있고. 종전선언 채택하면 자연스럽게 평화협상 또는 조약협상이 앞당겨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니까 그걸 앞당기려는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거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얘기 한거고 3자 또는 4자에서 최근 정부 입장은 4자로 가는 것은 남북미중 4자로 가는 걸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9월 유엔총회때 9월말 정도해서 4자정상이 유엔에서 만나서 종전선언에 서명을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정의용특사께서 하신 말씀은 북쪽에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9월말까지 종전선언 채택하는 게 어렵다는 반응을 해왔다고 해서 어려운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정상들이 그런 상황 만들어주면 여러모로 도움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을 이유로 해서 북한하고 협상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회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관계가 없다, 한미동맹도 관계가 없다, 완전히 별개의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을 미국에서 추진해나가는데 큰 걸림돌 없다고 보고. 만약 미국에서 종전선언 채택하게 되면 이제 북한이 정말 신고와 사찰 하느냐의 문제

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북한과 협상을 오래 했던 고위직 인사와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신뢰가 쌓이지 않는 한 신고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유는 뭐냐면, 북한이 신고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플루토늄 60kg 갖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 10kg 갖고 있고, 이걸 다 예를 든 가설적인 겁니다. 핵탄두 30개 갖고 있다. 이렇게 신고하면 미국에서 당장 반발할거예요. 우리가 추정하는건 너네 핵탄두 65개고 고농축 우라늄도 최소한 30kg 이상이 되고 플루토늄도 우리가 알기로는 70~80kg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침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입장에서는 신뢰가 없으면 hedging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양반 말로는 cheating과 hedging이라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경우는 미국을 믿지 못하면 항상 hedging, 위험 분산 전략을 한답니다. 근데 그걸 미국에서 볼 때는 그게 cheating이 되는 거예요. 신뢰 쌓이지 않으면 cheating과 hedging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국과 북한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쌓인 가운데서 신고와 사찰, 검증이라는 것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아주 사소한 걸로 싸움 붙으면서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봐야할 거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종전선언 대 신고사찰 동시교환이라는 것, 우리 정부 입장은 동시교환인데, 북은 이번에 동시교환을 받은거 같고 미국만 동시교환을 받으면 결국에 종전선언과 신고사찰이라고 하는게 동시에 이뤄질 거라 보는데, 거기에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미국 친구 분의 의견이 그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향후 전망은, 제가 볼 때 어떤 문제점 있냐고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2021년 1월까지 이뤄질까,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논쟁도 일어날거죠. 이걸 하기전에 미국, 북한, 한국까지 참여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될 거예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북한이 가져서 해체의 대상이 되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 핵지식을 가진 핵과학자와 기술자, 이 5개를 완전히 없애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앞으로 2년 반 사이에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또 사찰과 검증 과정 겪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북한이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오는가 하는 것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북한이 선제적으로 조치로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 같은걸 화끈하게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해외 반출 통해서 폐기하거나, 국내에서 미국 또는 유엔의 P5인 안보리상임이사국, 국제원자력기구의 입회하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가능할 거예요. 큰 덩어리를 먼저 북이 화끈하게 해체했을 때, 2년 반이라고 하는 timetable내에서 가능할까 한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동결-신고-사찰-검증, 이 과정을 겪으면서 2년 반 내에 할 수 있냐는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걸 한국 미국 북한 당국자들이 만나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되면 로드맵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검증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순차들, 동결-신고-사찰-검증, 이 과정이 아니고 중요 부분의 해체를 제일 동결 다음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겠죠.

신고를 그 담에 올 수도 있겠죠. 이런 파격적 조치를 통했을 때만 그게 가능하지, 지금까지 교과서적으로 처방된 순서를 따라서는 2년 반 만에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울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하는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얼마나 그에 따른 보상해줄 수 있느냐도 문제죠. 보상이라 하는건, 북한이 요구하는 건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적 보상입니다. 정치적 보상의 핵심은 북한 체제 인정해주는 겁니다. 북한체제를 인정한다는 건 결국 북한 유일지도체제 인정하는 거고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인정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더 바람직한 정치적 보상은 결국 국교를 수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 보상문제입니다. 군사적 보상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전략무기 전진배치를 하지 않고 북한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우리 남측에 있는 미국은 소유, 보유, 핵 무기의 검증가능한 폐기인데 남측에 미국의 핵무기는 없으니까 해당사항은 안된다고 봅니다만. 세 번째는 미국이 구두로나마 소위 재래식 군사적 위협을 북한에 가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군사적 보상의 가장 핵심은 불가침조약입니다. 불가침조약이든 선언이든 서로 침략 않는 걸 보장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재래식, 핵 위협을 북에 가하지 않는 게 군사적 보상이라고 보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경제적 보장입니다. 경제적 보장은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선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이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거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상

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재 완화가 상당히 중요한 유인책 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건설적인 정상적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러려면 북한이 IMF, WB, ADB(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 자체 변화 있어야 돼요. 첫째는 북한정부가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경제통계를 투명성 있게 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IMF, WB가 특정 국가에 대해서 경제관계를 맺는 것은 경제데이터, 통계데이터의 투명성과 진실성이 문제되기 때문. 그러므로 북한이 그걸 우선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북한이 시장 부합적인 제도 개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 부합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겁니다. 북한이 단순히 미국이 정치적으로 압력 넣어서 IMF, WB의 회원이 될 수 있는게 아니고. IMF나 WB는 자체의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부합하려면 북한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죠. 이것이 1단계고. 1단계는 제재완화, 2단계는 국제경제체제의 정상적 일원, 3단계는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해외투자의 증대겠죠. 또는 정부의 경제지원의 증대인데. 이런 것들이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과정과 북한이 원하는 이러한 인센티브들, 이것을 같이 놓고 로드맵을 한-미-중까지 껴서 만들어 내야만 2021년 1월까지 전 세계가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가 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계 미국인인 성킴이 최설희와 협상을 하고 앤드류킴 같이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분들이 미국하고 협상하는데도 미-북간에 communication failure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 말이 잘 되

고 미국은 미국계 한국인이 가서 얘기하는데도 말이 잘 안 되는게 잘 이해가 안 되서 그래서 참 그게 우리의 큰 자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얘기 하는건 얼마든지 북-미간 얘기할 수 있는-건데 다시 우리 통해서 미국에 전달하게끔 하는 것들을 봐서는 북-미간 communication channel상에 좀 문제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아니냐, 그것뿐만 아니라 판문점선언 3조에 나오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자꾸 북-미간 문제라 간주했는데 엄격하게 우리가 합의한 바를 보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많다, 라는 그런 점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판문점선언은 제대로 이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판문점선언 2조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육해공에 있어 소위 적대적 행위 중지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우발적 군사충돌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표명했거든요. 이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핵위협도 있긴 하지만, 당장 걱정하는 것은 휴전선과 DMZ와 서해 있어서의 남-북간 군사적 우발 충돌을 제일 염려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문재인대통령도 상당히 강조하셨죠. 결국 DMZ와 서해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지고 남-북간 합의 통해서 현명하게 통제, 조절할 수 있다면 평화의 반은 온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시킨다, GP 소위 경계초소를 서로 뺀다부터 시작해서 DMZ에서 유해공동 발굴,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서해 NLL 쪽에 있어 군사적 충돌 완화시

키는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우리 측이 많은 제안을 냈는데 북한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판문점선언 2조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습니다. 판문점선언 2조는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독자제재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군사적 신뢰구축 쌓고 우발적 충돌 방지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기름 들어가는 거 아니고 물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판문점 선언 2조가 지금처럼 잘 추동되어서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느끼는 평화를 가져 오는데 공헌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Q&A]

▲ 박영선의원 질문

시진핑 주석이 9.9절에 갈 것처럼 보도가 나오다가 지금 안가는 걸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설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종대의원 질문

각자의 비핵화 문제를 추동하는 한국, 미국, 북한의 국내정치 문제입니다.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럴 때 트럼프가 국내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그것이 북한에 대한 정책변경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북한도 내부 국내정치적으로 복잡한 양상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북한도 상당히 정책이나 전략이 혼란스러워 보일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것이 북한의 국내사정과 모종의 관련성 있냐하는 궁금한 지점들이 많이 생기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문제나 여러 가지 여-야간 한반도 문제를 국내정치에서 풀어가는데 있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제관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정치라는 측면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접점의 영역도 매우 다양하게 관찰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정인

--박영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저도 중국에 얼마 전 다녀왔을 때 시진핑 주석이 9.9절 행사에 가는 걸로 얘기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북한이 신고 사찰하는 문제까지도 미국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는 게 결국 뒤에 중국 배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마 이견 거 같습니다. 중국이 대북정책 혹은 한반도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약이 되거든요. 첫째는 기본원칙은 한반도의 평화안정, 두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 세 번째는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푼다. 이게 3대 원칙이고요. 그리고 2대 전략은 쌍중단, 쌍궤병행임. 즉,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중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이게 쌍중단이고, 쌍궤병행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동시켜 나가자. 그런데 3대 원칙과 2대 전략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다 전개가 되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부분에 와서는 중국은 북한이 표방한 점진적 해결, 행동대 행동 원칙에 기초한 동시 교환, 이 2가지 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미국이 생각할 땐 두 가지 북한이 협상 전략에 대한 중국의 공개적 지원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덜 협조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미중 통상마찰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주석이 9.9절 참석해 트럼프의 심기를 더 건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리잔수 전인대 위원장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 아마 중국은 그만큼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신경 쓰는거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국내정치 변수. 제일 중요하죠. 결국엔 외교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 자꾸 내라고 하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북한 군부를 포함해서, 북에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줬는데 얻어온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국내 정서가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도 받아와야 결국 reciprocity, 상호등가성이 성립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내여론이 있는게 아니냐는게 일반적 관측인거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정은도 국내에 face-saving 해야 되는데 지금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하려는 게 상당히 보이는 것 같고. 또 트럼프대통령 입장에선 싱가포르선언 해냈는데 총론은 좋은데 각론 얻은 게 뭐있냐, 하나도 없지 않냐,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미국 같은 데는 워싱턴 싱크탱크 포함해서 언론들 포함해서 이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verification fundamentalist라고 하는데 검증원리주의자들 경우엔 신고-사찰-검증,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신고-사찰-검증이 제일 중요하기에 때문에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트럼프행정부 입장에서라도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서 북한보고 빨리 신고사찰하자, 이

렇게 나온 거고 국내변수가 많은 거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죠.

판문점선언과 2차정상회담하고 잘 했다 하는데 진전되는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문재인정부를 지지한 쪽에서는 남북관계가 더 빨리나가야 하는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보수적 생각 가진 분들은 되는거 하나도 없이 손에 건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전선언하면 주한미군 떠나는거 아니냐,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결국 국내의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의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모든 외교정치도 그 기본은 국내정치입니다. 국내정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입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판문점선언 같은건 국회 비준을 하는게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야 판문점 선언의 이행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비핵화에도 그래야 더 큰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라는 것은 사실 안 해도 관계는 없지만 하면은 남북관계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박선숙의원 질문

판문점선언 지지 및 국회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었고 실제로 제출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발의하고 여러 의원 동의 속에 제출했던 건 국회가 비준을 하는 건 단지 찬성여부를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 판문점선언의 내용이 어떤 것이란걸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교수님 표현을 빌리면, 검증원리주의와 그렇지 않은 입

장이 해석의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비준이 이뤄졌을 때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나가는 남북관계에 대하여 국회는 이렇게 해석했다, 라는 의견개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여 그것은 비준의 절차를 국회가 밟는건 한편으론 권한을 행사 하는 것이고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그 논의 시작해야 한다. 찬반 관한 논의자체를 시작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북한의 행동과 그에 따른 보상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분은 이런 의견을 가지시더라고요. 북한이 이미 자기들이 4가지 선제적 행동 보였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이 과정을 북한 내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걸로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데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4가지 행동을 한 것이 상당히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보여준 것이어서 지금 일정하게 그에 따른 보상 혹은 성의표시가 미국 측에서 있다면 그 다음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던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로드맵을 행동과 보상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북 실무협상을 판문점에서 우리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진행했는데 저는 그 내용에 첫 번째 의제가 당연히 신고와 사찰 대상에 대한 논의가 되었어야 하고 그 테이블에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관해서 당연히 서로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접근을 했다고 보시는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통계를 가져야 국제시장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숫자에 대한 어지간한 정도의 거리가 좁혀져야 로드맵의 기초 마련 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 윤후덕의원 질문

전문가한테 일반국민 시각에서 궁금한 거 3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의미 갖는지, 미국 시각에서 봤을 때, 평가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속도, 시간, 이게 언제 되는지 이런 궁금증을 실제 갖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 수교할 때 8년 걸렸다고 하고 베트남과 수교할 때 시작서부터 한 10년 걸렸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연 초에서 시작했다고 치면 6개월 지난건데 미국하고는 몇 개월 된건데. 교수님이 2년6개월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 해낼 수 있는 타이트한 프로세스를 말씀주시고 그에 따른 현실적 부담도 말씀 주셨는데 그런 틀에서 9월 18~20일 문재인대통령이 평양에 가셨을 때 핵심 주제가 뭐가 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2년 반을 넘어가면 어떤 프로세스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정인

--박선숙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두 분 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박선숙 질문에서 종전선언을 북한에서 계속 주장 하는게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셨는데, 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북한이란건 유일지도체제고 최고존엄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알려있지만 그 안에는 부처별 차이점도 많고 논쟁도 많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뭔가 성과를, 왜냐면 김정은 위원장 지금 통치 하는게 성과주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이니셔티브한 일들에 대해 성과를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주민과 북한군부 같은 곳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성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북에서 그렇게 미국 측에 요구하는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두 번째, 신고사찰문제 어디까지 왔느냐는 외교 비밀이라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제가 알기론 미국 특히 성김쪽에서 신고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파격적인 양보까지 했는데 북이 수용 안했다 얘기를 워싱턴에서 들었거든요. 구체적 내용은 모르지만 신고라고 하는게 미국이 원래 생각한 신고보단 훨씬 유연한 신고 조건을 냈는데 북에서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바뀔 사항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미국 쪽에선 그만큼 북측하고 대화의 모멘트를 살리려는게 강한거 같아요. 근데 그게 안됐고 교착상태 왔다가 이번 특사 방문과 이번에 18~20일 대통령께서 평양방문하게 되면 큰 전환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윤후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윤후덕 의원님이 말한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간단한데 미국 의회에선 크게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워싱턴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도 잘 못하는 한국 정부가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북미관계 잘되라고 나서는데 의미가 있겠느냐는 냉소적 얘기는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생각 하는건 비핵화가 제일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부수물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북미관계가 어려우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거든요. 제가 지금 현 정부 정책을 보는 것은 비핵화가 중요하지만 비핵화에 모든 것을 예측시키면 비핵화가 안 되면 남북관계도 안되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안되고 북한의 경제적 변화도 어려워지는 거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어려워지고,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최소한 남북관계라도 활성화시켜서 북미관계가 어려워지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다른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자, 요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특사방문단이 그걸 증명하는 거죠. 북미가 어려웠을 때 남북이 협력해서 새로운 돌파구 만드는 새로운 모델 보여준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을 해주면 미국에 가서 얘기할 때 대한민국에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 그러니 당신들도 우리를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가령 남북연락사무소 만드는데 미국 측에서 반대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 의원분들이 워싱턴 가서 미 의회 지도자들 만나면서 판문점선언 여야가 다 같이 비준을 통

해서 지지해 준거다, 국민적 합의가 거기 있는 건데 미국에서 그거 양해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걸 얘기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회의 대외 외교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국은 특히 트럼프대통령은 중간선거 끝나면서부터 상하원에 변화 있을 텐데 그럼 의회 힘이 더 커지거든요. 트럼프 레임덕도 시작되면 더 그럴 것. 그럼 의회하고 상당히 만나야 할 텐데 미국 의회는 다른 일반 정부와는 상당히 어려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만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외교의 중요성 상당하단 말씀 드리고.

비핵화 속도-시간과 북미수교 속도-시간은 같이 갈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미수교 먼저 파격적으로 해주고 가령 1에서 10까지라 하면 북한이 5에서 6정도의 비핵화 행보를 보이면 front-loading, 선제적 조치 포함해서 저는 미국에서 북한하고 수교를 맺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평양에 미대사관 있어야 북에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협상도 용이해지고, 모니터링도 용이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자꾸 북미수교를 비핵화 마지막 단계의 출구라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 생각이 돼요.

얼마 전 조셉 윤 대북 특사 했던 분을 미국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본인은 북한하고 협상하는데 너무 큰 건 안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셉 윤 대사 같은 사람의 얘기는 영변 시설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가 가서 사찰하는 정도, 두 번째로는 북미 연락사무소 교환하는 정도에서 시작해야 나중에 신고사

찰에도 더 탄력 붙을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너무 목표 높게 잡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해야 된다고 조셉윤 대사가 얘기하는데 전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 박병석의원 맺음말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까지 종전선언과 핵리스트의 제출이 동시에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취재해주신 언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후 북핵 전망¹⁾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작년 한 해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가장 첨예한 안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김정은의 핵 야망과 무모한 군사 도발, 도널드 트럼프의 공세적 수사와 군사 행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강경 기조, 여기에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양극화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매우 위중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9일 취임과 더불어 이러한 안보 딜레마에 봉착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맞으면서 지난 4월 27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실패로 끝나면서 한반도에는 난기류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남북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동시에 현 교착 국면의 원인,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전망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한반도 분단, 전쟁, 그리고 비극의 살아있는 상징이었던 판문점. 그 곳에서의 12시간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평화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1) 국회 박병석 의원실 강연 요지 2018.9.7. 15:00-16:30. 국회 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 앞에서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서명식을 보던 북 김여정의 “현실인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감동 어린 발언처럼 이는 한 편의 초현실적인 영화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 극심한 위기감과 전쟁의 공포에서 몸서리쳤던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 합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슬로건에 요약되어 있듯이, 남북은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2007년 1,2차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 두 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했던 저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훨씬 돋보인다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과 군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실속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정상화 부분에서 많은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지역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산가족 문제에도 큰 진전을 보았습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에 이산가족·친척상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 을 명시했습니다. 양 정상 모두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으며,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문점 선언은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도 했습니다. 또한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안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양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준수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의 평가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은 여러 면에서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이 내거는 목표가 담대하고 파격적이라는 점입니다. 70년 가까이 묵은 전쟁을 그 것도 금년 안에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 대한 점진주의적이고 중장기적 접근에 길들여져 온 우리에게 이 두 정상의 의기투합은 참으로 사변적인 발상의 전환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제 설정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남측은 구체적 합의를 원하는 반면 북은 원론적인 포괄적 합의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이 두 시각을 절묘하게 절충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측은 기능주의와 ‘쉬운 것부터 먼저, 어려운 것은 나중에 (先易後難)’ 원칙에 의거 경제나 사회문화 부분의 협력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정치, 군사 문제가 풀리면 다른 모든 게 풀린다는 ‘툭 다운’ 방식의 일괄타결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차이점을 극복하고 전쟁 종식, 평화체제, 그리고 비핵화와 같은 핵심 의제에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문에 명문화 한 것도 획기적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 측이 강조했던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관심도 지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과거 북한의 입장을 보면 핵 문제는 오로지 미국과 북한 간 문제이기 때문에 남측은 길 여지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구현’을 서면 상으로 확인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또한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대해 전례 없이

보도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더욱이 파격적인 것은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은 아직 사용 가능하고, 5월 중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 및 기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폐쇄할 것” 이라고 밝힌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김 위원장의 정책적 행보 또한 충분히 실용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의 선제조건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축소나 한미동맹의 지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대화해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 그리고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미국과 자주 대화해 신뢰를 쌓고 종전선언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같은 발언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뒤집어 말해 남측이 바라는 대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실현된다면, 북측도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전례 없이 고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과거의 합의와 선언을 이행하지 못했던 점에 주목하며 이번에는 합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언문에 포함된 합의 사항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요 회담과 행사 날짜를 선언문에 매우 구체적으로 박은 것도 과거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고위급 회담, 정성급 군사회담, 그리고 적십자 회담이 5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8월 15일에 진행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금년 가을 평양 방문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는 예전의 사례로 보아 매우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형식과 상징 면에서도 이번 판문점 회담은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땅을 밟는 장면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

지요. 그 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언제나 북한에 가볼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하자, 김 위원장은 “지금 함께 넘어가 보지요” 라고 응수하며 문대통령을 북으로 이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단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 모두에게는 엄청난 함의를 가지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 두 정상에 보여 준 것은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인위적인 경계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를 허물어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연출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적인 행동이 우리 겨레 모두에게 감동으로 다가 왔던 것입니다.

북한 대표단의 구성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원맨쇼 리더십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방, 외교, 한반도 사안을 다루는 조직의 핵심인사들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이 젊은 지도자를 동행하였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외교 부문은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대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북관계는 김영철, 리선권 등이 대표하는 통일전선부가 담당하는데 이 번 정상회담에서는 당, 군, 내각 전 분야의 대표적 인사들이 참석함으로써 북이 이제는 보다 제도화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의 지도자가 국내외 기자 앞에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것도 새로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선언 발표 후 이어진 만찬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남북 정상 간 오, 만찬과 다르게 격식 없고 우호적이며 활기찼습니다. 두 정상과 그 배우자들은 더욱 가까워졌고, 개인적인 신뢰와 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만찬 내내 불신과 적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끊임없이 건배를 교환하며 돈독한 인간관계를 다지며 남북관계의 밝은 미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의 성공과 제약 요인

그렇다면 무엇이 이 놀라운 성공을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우선,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기획, 연출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전향적 자세는 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경제입니다. 금년도 신년사와 4월 21일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은 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까지도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김위원장의 결단과 의지가 이번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성실성, 열린 마음,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 또한 크게 주효했다고 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단,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이를 간파했고 북이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과 북한 사이를 연결하는 ‘정직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3월 초 우리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분명히 들어 났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등 국내 관계자들이 술한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과 협의하고 설득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컸었습니다. 외교적 노력 보다는 최대한의 압박과 강압, 그리고 군사행동을 암시하는 그의 행보는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행한 연설에서처럼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통해 ‘북한을 완전히 파괴’ 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많았지요. 그러나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과 강압, 그리고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한 격려와 지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 전략이 절묘하게 먹혀들었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문점 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데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묵은 한반도 갈등을 짧은 시간 내에 항구적인 평화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 축적끼리 군사 긴장완화, 신뢰 구축, 그리고 단계적 군축을 해 낸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과제입니다. 1993년부터 지속되어온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시설, 물질 및 핵탄두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의향이 진짜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회의론자들은 그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반 한 점진적이고 동시적인 교환 방식을 강조하며 과거와 같은 살라미 전술을 취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북한 내부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김 위원장이 군부를 통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 라는 합의 이행을 군부가 순순히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과거처럼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서 실리만 챙기고 다시 협상을 파국으로 몰아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이나 미국 모두 이러한 북의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그러한 전술을 추구한다면 이번 합의 전체가 위협에 빠지게 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과거의 패턴과 죄와 벌의 반복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군사 행동과 전쟁 가능성을 키우면서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북한은 이러한 과거의 관행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남측 역시 국내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당장 정부가 바뀌어도 합의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가 원만해져야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는 미북관계의 부수물이 될 수 없다’ 고 밝히며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구조적 성격을 감안 할 때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는 세밀히 조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성공적인 이행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6.12.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우여 곡절 끝에 열린 6.12 북미 정상회담은 결국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네 가지 사항에 합의 했습니다. 첫째, 북미 관계의 새로운 시작, 둘째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셋째, 판문점 선언 재확인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마지막으로 6.25. 당시 포로 및 행방불명된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이 그 것입니다.

무엇 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70년 넘게 적대 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났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와 안정 보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그대로 반영 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평소 주장하던 쌍중단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지와 한미연합 훈련과 연습의 중단)과 쌍궤병행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병행 추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도 비핵화와 남치 일본인 문제 관련하여 진전된 입장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패자가 아닌 승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외교에서는 그런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교적 이득의 상대적 차이는 있을 지언 정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북미 회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CVID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가 빠져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남 북미 정상들은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denuclearization)’ 가 CVID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핵화의 진전 과정을 보면 이 점이 구체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단도 여러 가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한미동맹의 전투준비태세를 약화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이완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잠정 중단이지 축소나 폐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 1992, 1994, 1995, 1996년 4 차례에 걸쳐 팀 스피리트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적 조치라고 뜻을 박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적으로 나오면 즉각 재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조치는 북한이 지난 7개월 동안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았고, 억류 미국인 3명을 송환하는 동시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는가 하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조치를 취한데 대한 일종의 보상적 행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 이행입니다. 그 이행 여부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사가 결정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낙관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북미관계 교착과 북핵 타결 전망

사실 잘 나가던 한반도 정세가 지난 7월 중순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7일 마이클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북미 간에 핵 검증 워킹 그룹을 두는데 합의했고 비핵화의 시간표에 진전을 보았다고 폼페오 장관은 주장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여론은 대부분 비관적,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 측은 미국이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하면서 미 측 태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북측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는 아주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북미 협상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북미 간 교착 상태는 이미 예고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

한은 북한 핵문제 해법에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미국은 북 핵의 일괄타결, ‘선 폐기, 후 보상’ 그리고 시간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핵 폐기를 실천해 나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자세를 비판하며 북한은 점진적, 그리고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거 동시 교환에 따른 핵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 입장 변화를 보인 바 있으나 미국의 의회, 언론 등 주류 의견은 트럼프 행정부 견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선 신고 사찰, 후 종전선언’ 과 북한의 ‘선 종전선언, 후 신고 사찰’ 간 간극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물질, 핵탄두, 그리고 탄도미사일에 대한 보유 현황을 먼저 신고하고 사찰을 받으면 종전선언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북미 협상에서는 북측이 신고 의지만 구두로 보이기만 해도 종전선언을 해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북한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합의 했듯이 종전선언을 먼저 채택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 해 적대관계를 청산 한 후에야 신고와 사찰에 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다소 소극적인 이유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받아줄 경우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동맹 균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고 도발적 행동을 해도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종전선언을 제일 먼저 주장한 측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째인 지속되어온 비정상적 전쟁 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남북 및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정전 협정 체제를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계를 연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주장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 나가고 평화조약 체결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가속화 하자는데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채택과 북핵의 신고, 사찰’ 을 동시에 풀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는 별도로 미국은 한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서해 군통신선 재개, 이산가족 재상봉,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 남북공동사무소도 곧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북미관계가 어려우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남북 행보의 속도를 북미행보의 속도에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 역시 현 국면을 풀어 나가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2차 회동 이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시 주석은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 문제의 타결’ 을 주장해 왔지만 북한 비핵화의 방법론에서는 미국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쌍중단, 쌍궤병행’ 을 포함하여 북한이 선호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점진적 해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할 것 아닌가 하고 우려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맺는 말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오랫동안 간직해 온 목표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 발판을 만들어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로 향하는 길 위에는 숭한 제약과 도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냉엄한 현실을 한결 같이 인식할 때라야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동안 신중하고 끈기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전개되는 ‘한반도 평화의 봄. “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이 역사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평화가 일상적인 것이었으면 좋겠다. “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대통령의 소회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그 소회가 현실화되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군사적 신뢰구축 및 재래식 군축, 경제협력, 동북아안보협력 등 다른 모든 이슈를 결정짓는 핵심변수로 작용하는 한, 비핵화는 물론 다른 분야의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제주포럼에서 필립 젤리코 전 미 국무부 자문관(2006년 11월 APEC 정상회담 당시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상의 기안자임)의 제안은 참으로 창의적이라 하겠습니다.

- 젤리코는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제한된 협상에서 벗어나 관련국들이 △비핵화 △평화체제 △경제협력 △군축·군비통제 △인권 및 인도주의 논의 △동북아 안보협력이라는 6개 분야 포괄적 의제를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환해야 한다고 것입니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라는 큰 틀에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포괄적으로 그 속에 내재화시킴으로써, 비핵화가 전체 논의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큰 틀의 평화프로세스 논의가 비핵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아이디어인 바 이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층적 협의 채널의 활성화입니다. 최근까지 북핵 및 평화체제 논의는 남북, 북미, 남·북·미라는 양자 혹은 3자 틀에서 진행돼왔으며,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견인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착 상태를 감안할 때 보다 신축적이면서도 다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남북관계를 과감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판문점선언 1조 남북관계 개선과 2조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평화지대 및 평화수역 조성 등을 북미관계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본격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구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 미국의 반대를 예상해볼 수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동결상태를 유지하는 한 최소한의 설득 명분은 구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종전선언을 조기에 실행하면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종전선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는 방식인 바, 이를 위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채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남·북·미·중은 물론 러시아·일본까지 포함하는 6자 논의 역시 조심스럽게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박병석 의원 귀하

한국, 일본, 독일 방위비분담금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김도희
Tel.788-4556/Fax.788-4559
E-mail: doheekim@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한국, 미국, 독일 방위비분담금 비교

- 각 국가별 GDP, 국방비, 주둔미군 병력규모 등 비교
- 각 국가별 방위비 집행 관련 정책 비교

(회답일 2018. 9. 21)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방위비분담금 현황 및 결정방식과 관련하여 관련 연구 및 자료를 조사함

■ 주요내용

- GDP 대비 방위비분담률은 한국에 비해 일본이 약간 높고, 독일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분담률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각 국 방위비분담금의 산정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들 간의 산술적 비교는 해석상 큰 의미가 없으므로 참고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한국·일본·독일은 모두 SOFA를 근거로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방위비분담을 위한 SMA를 체결하여 주둔 미군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독일은 SMA가 없으며, 과거와는 달리 주둔군으로서의 미군을 지원하기보다 NATO의 공동방위를 위한 분담금 지출이 대부분임
- 제공방식의 측면에서도 한국이 ‘현금+현물’ 지원을 하는데 반해 독일의 경우 주로 NATO 분담금제공 + 간접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 정부가 집행을 담당하는 등 직접적으로 미군 측에 현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또한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의회의 통제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목차

1. 방위비분담금 현황_01
2. 방위비분담금 관련 정책 비교 _08

1. 방위비분담금 현황

- 미 국방부는 그동안 동맹국들의 방위비분담에 대한 공식자료를 발간해오다가 2004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식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¹⁾ 따라서 각 동맹국들의 방위비분담금 규모는 각 국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가 간 직접비교는 해석 면에서 한계가 있음²⁾
- 따라서, 본 회답서는 방위비분담금 항목의 구성이 각 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주로 SMA에 의한 직접지원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일본의 경우는 한국이 SMA를 통해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항목으로 구성되는 배려예산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정의하여 살펴보고자 함

1)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현황

- 우리나라 GDP 및 국방비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표 1]과 같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분담금 비율은 분담 첫해인 1991년에 최저 0.0393 퍼센트에서 최고 0.0852퍼센트의 분포를 보임
 - 최근 10년간은 0.05-0.06퍼센트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0.064퍼센트의 분담률을 보임
- 국방비 대비 분담률은 최저 1.44퍼센트에서 약 4퍼센트까지의 분포를 보임

[표 1] 연도별 GDP · 국방비 대비 방위비분담금 비율 현황

(단위: 억원)

연도	방위비 분담금	GDP	GDP 대비 비율(%)	국방비	국방비 대비 비율 (%)
1991	1,073	2,732,674	0.0393	74,524	1.44
1992	1,305	2,388,772	0.0546	84,100	1.55

1) 미 국방부가 발행하였던 공식자료인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A repor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by the Secretary of Defense」(DoD, 2003)은 2004년까지만 공개되고 있음(사실상 작성이 중단된 것인지, 공개가 금지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2) 독일의 경우는 NATO 분담금 외에 주독미군에 대한 분담금 규모가 크지 않고, 민간예산과 국방예산의 지원부서가 다른 등의 사유로 인해 취합된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려지고 있음

1993	1,694	3,100,737	0.0546	92,154	1.84
1994	2,080	3,660,542	0.0568	100,753	2.06
1995	2,400	4,289,271	0.0560	110,744	2.17
1996	2,475	4,811,408	0.0514	122,434	2.02
1997	2,904	5,303,471	0.0548	137,865	2.10
1998	4,211	5,244,768	0.0803	146,275	3.05
1999	4,401	5,768,728	0.0763	137,490	3.20
2000	4,685	6,351,846	0.0738	144,390	3.24
2001	4,882	6,881,649	0.0709	153,884	3.17
2002	6,135	7,619,389	0.0805	163,640	3.75
2003	6,690	8,109,153	0.0825	174,264	3.82
2004	7,465	8,760,331	0.0852	189,412	3.94
2005	6,804	9,197,973	0.0740	208,226	3.26
2006	6,804	9,660,546	0.0704	225,129	3.02
2007	7,255	10,432,578	0.0695	244,972	2.96
2008	7,415	11,044,922	0.0671	266,490	2.78
2009	7,600	11,517,078	0.0660	285,326	2.62
2010	7,904	12,653,080	0.0625	295,627	2.67
2011	8,125	13,326,810	0.0610	314,031	2.59
2012	8,361	13,774,567	0.0607	329,576	2.54
2013	8,695	14,294,454	0.0608	343,453	2.53
2014	9,200	14,860,793	0.0619	357,056	2.58
2015	9,320	15,641,239	0.0596	374,560	2.49
2016	9,441	16,374,208	0.0577	387,995	2.43
2017	9,507	16,832,686*	0.0565	403,347	2.36

참고: 2017년 명목GDP는 2016년 확정GDP에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8을 곱하여 계산함

자료: 국방부 (http://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401020000),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 제공자료(17.8.4) 및 한국은행 통계, 점유율 필자계산

2)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현황

- 그동안 일본은 미국에 의해 방위비분담의 본보기 사례로 인정받아왔음. 미국 측 자료에 의하면 현 SMA(2016-2020)에 따른 일본의 분담률은 매년 16억 달러 정도임. 이 외에도 일본은 시설개선사업(Facilities Improvement Project, FIP)을 통해 매년 1억 75백 만 달러 정도를 지원하고 이 규모를 포함하면 매년 17~21억 달러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³⁾
- 일본 방위성의 자료를 보면, 1995년 이후 일본은 매년 약 1,400억 엔이 넘는 비용을 SMA를 통해 지원하였고, FIP 등을 통한 지원을 포함하여 1,920억 엔을 지원하여 배려예산 전체적으로 매년 약 3,200 ~ 4,300억 엔 정도를 지원하였음

3)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RL3343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2.16.), pp.22-23

- GDP 대비 방위비분담률을 살펴보면 1991년 최저 0.049퍼센트였으나 1999년에 최대치인 0.083%퍼센트였고, 평균 0.07퍼센트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음
- 1997년 이후의 국방비 대비 분담률을 살펴보면 최저 6.74퍼센트에서 최대 8.74퍼센트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이후 6퍼센트대로 감소했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2]참조)

[표 2] 일본의 연도별GDP · 국방비 대비 배려예산 비율 현황

(단위: 억 엔)

연도	방위비 분담금 (배려예산) ⁴⁾	GDP	GDP 대비 비율(%)	국방비 ⁵⁾	국방비 대비 비율 (%)
1991	2,367	4,787,916	0.049	-	-
1992	2,732	4,913,019	0.056	-	-
1993	3,280	4,946,516	0.066	-	-
1994	3,737	5,015,377	0.075	-	-
1995	4,191	5,125,418	0.082	-	-
1996	4,234	5,258,069	0.081	-	-
1997	4,245	5,341,425	0.079	49,400	8.59
1998	4,058	5,278,769	0.077	49,300	8.23
1999	4,299	5,196,518	0.083	49,200	8.74
2000	4,268	5,267,060	0.081	49,200	8.67
2001	4,043	5,230,050	0.077	49,400	8.18
2002	3,958	5,159,862	0.077	49,400	8.01
2003	3,876	5,154,008	0.075	49,300	7.86
2004	3,837	5,209,655	0.074	48,800	7.86
2005	3,769	5,241,329	0.072	48,300	7.80
2006	3,714	5,268,797	0.070	47,900	7.75
2007	3,582	5,316,883	0.067	47,800	7.49
2008	3,499	5,207,158	0.067	47,400	7.38
2009	3,343	4,895,011	0.068	47,000	7.11
2010	3,276	5,003,540	0.065	46,800	7.00
2011	3,242	4,914,085	0.066	46,600	6.96
2012	3,259	4,949,572	0.066	46,500	7.01
2013	3,258	5,031,755	0.065	46,800	6.96
2014	3,222	5,136,980	0.063	47,800	6.74
2015	3,315	5,301,569	0.063	48,200	6.88
2016	3,370	5,370,608	0.063	48,600	6.93
2017	3,836	5,441,576	0.070	49,400	7.77

자료: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 「Defense programs and budget of Japan」, 방위성(Ministry of Defense) 자료, 백재옥(2017)에서 재인용 및 필자 합산 및 2017년 내용 추가; GDP - 일본 내각부 자료

4) 배려예산은 노무비, 광열수수료 등, 그리고 훈련이전비를 포함한 SMA 합계와 FIP, 기지종업원대책 등을 포함하여 합산(세출액 기준)하였음

3) 주요국 주둔 미군 병력 규모 비교⁶⁾

- 2017년 9월 현재 현역(Active Duty), 방위군 및 예비군(National Guard and Reserve), 민간 군무원(DOD Civilian)을 포함한 미군주둔현황은 [표 3]과 같음
- 일본이 가장 많은 51,452명이 주둔하고 있고, 독일이 47,055명, 그리고 우리나라에 27,123명⁷⁾이 주둔하고 있음

[표 3] 주요국 미군 주둔 현황

(단위: 명)

	국가명	현역	방위군및 예비군	민간군무원	총합계
1	일본(JAPAN)	44,562	363	6,527	51,452
2	독일(GERMANY)	34,435	1,710	10,910	47,055
3	대한민국(ROK)	23,635	533	2,955	27,123

- 종합해보면 미군주둔병력 규모는 ‘일본> 독일> 한국’ 순으로 방위비분담금 규모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독일의 경우는 한국보다 주둔인원이 많으나 NATO회원국으로서의 주둔비용 부담이 혼재되어있기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4) 방위비 분담금 비교

-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을 비교하고 있는 자료는 많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비교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가. 2013년 보고서

- 2013년을 기준으로 한·일·독일의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비교하고 있는 연구용역

5) 1996년 이전의 일본 국방비 데이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6)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by Service/Agency by State/Country (September 2017) 참조하여 정리 (https://www.dmdc.osd.mil/appj/dwp/dwp_reports.jsp, 검색일: 2018.1.2.)

7)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둔중인 주한미군 병력은 28,500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집계 시점 및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자료가 있음([표 4] 참조)

- 분담금 규모로만 보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적은 편이나, 해당국가의 주둔규모, 부담능력 및 대응위협 등 동맹의 주요성격이 다르므로 액수 그 자체로만 비교하는 것은 해석에 큰 제한이 있음
- 2013년 기준 한국, 일본, 독일의 GDP 대비 방위비분담금을 보면 한국이 0.068%, 일본이 0.064%, 그리고 독일이 0.016%임. 한국은 일본과는 유사하거나 조금 더, 독일에 비해서는 더 많은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⁸⁾

[표 4] 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비교(2013년)

구분	한국	일본	독일
GDP	1.15조 달러	5.98조 달러	3.37조 달러
분담금	7억 8,213만 달러	38억 1,735만 달러	4억 7,495억 달러
GDP 대비 분담금	0.068%	0.064%	0.016%

박휘락, 「주요 미군주둔 국가(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3, 111쪽

나. 2016년 보고서

- American Action Forum의 2016년 발간 보고서⁹⁾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의 액수만 단순 비교해보면 한국이 가장 적은 금액을 분담하고 있으나, 분담률 면에서는 일본(50%), 한국(41%), 독일(18%) 순이었음([표 5] 참조)
- 이를 2016년 3개국 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을 환산하여 추정치를 도출해보면, 한국이 0.055%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일본 0.040%, 독일 0.026%순이었음
- 다만, AAF 보고서는 방위비분담금을 미 상원군사위원회와 랜드연구소의 자료를 사용하였다고만 밝히고 있고 상세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아 각 국 분담금을 어떻게 추산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해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참고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배려예산으로 추정된 2016년 GDP 대비 방위비

8) 박휘락, 「주요 미군주둔 국가(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3, 111쪽 참조.

9) Hoff, Rachel, 「Burden-Sharing with Allies: Examining the Budgetary Realities」, American Action, Forum, 2016.11.1.

분담금 비율이 0.063%이므로, AAF 보고서는 일본의 방위비 분담률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추산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표 5] 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비교(2016년)

구분	한국	일본	독일
GDP	1.41조 달러	4.94조 달러	3.47조 달러
분담금	7억 7,700만 달러	20억 달러	9억 700만 달러
GDP 대비 분담금	0.055%	0.040%	0.026%

참고: GDP는 IMF의 Current Prices(billion, US dollar)자료와 AAF의 분담금 자료를 사용하여 필자 계산

다. 종합

-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분담률은 평균 약 0.64퍼센트 정도이고, 일본은 약 0.07퍼센트 정도로 일본이 약간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독일의 경우 2013년과 2016년 보고서를 참고해보면 대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1997년 이후 한국의 국방비 대비 방위비분담률은 평균 약 2.91퍼센트 정도이고, 일본은 약 7.62퍼센트 정도로 일본이 약 2.6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음¹⁰⁾
- 다만, 각 국마다 방위비분담금에 포함하는 항목이 다르므로 각 국의 수치를 별 다른 고려 없이 산술적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해석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우므로, 각 자료들을 참고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고려하여야 함

10) 독일의 경우 방위비분담금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음. 다만, 박희락(2014)은 1961년부터 1975년까지의 독일의 방위비분담금을 기준으로 양자협정을 통한 주독미군 평균 지원 금액을 연간 8억 3천만 달러로 계산하고, 이에 나토지원금 5천만 달러를 합하여 약 9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2. 방위비분담금 관련 정책 비교

1) 각 국의 방위비 분담금 개관

가.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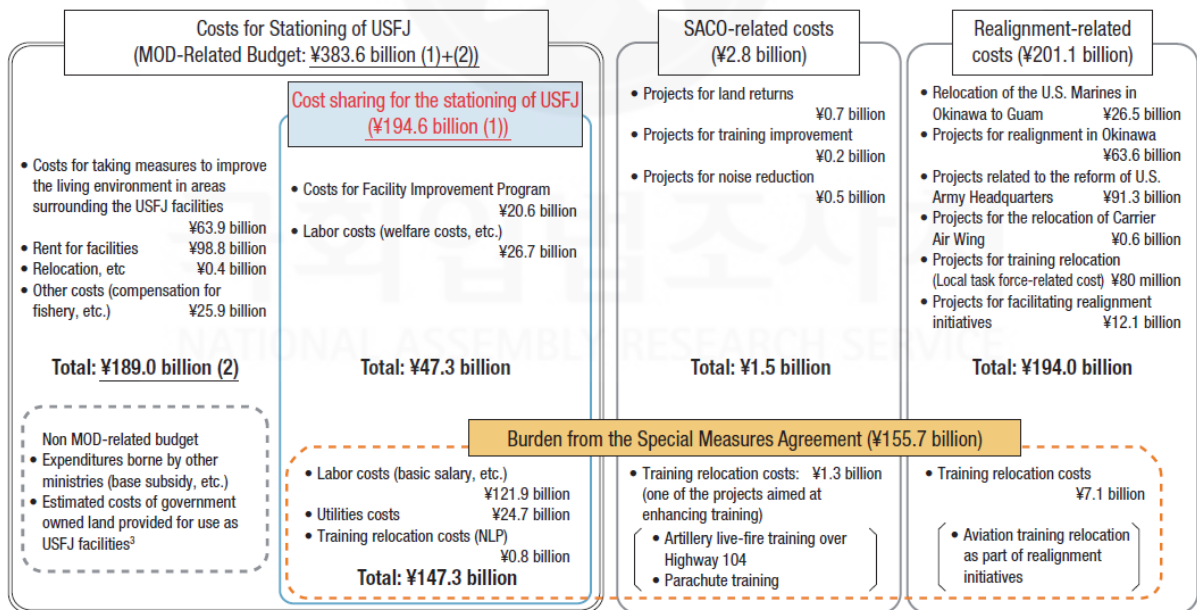
- 현재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은 항목별로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어 있음. 인건비는 당해 연도 중 현금(원화)으로 균등 지급되고, 군사건설비용은 현금 및 현물로 지원되고 있으며, 군수지원비용은 현물로 지원되고 있음
-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건설비 지원체계는 제8차 협상(2009년 이후)부터는 현물 지원체계로 변경되었으며, 현금지급비율은 95%(5·6차 협정), 90%(7차 협정), 70%(8차 협정, 2009년), 40%(2010년), 12%(2011년) 순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고 함.¹¹⁾ 그러나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현금 미집행액 약 7,000억 원이 커뮤니티 은행에 예치되어 연간 30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발생되었음이 제9차 방위비 협상 중에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음
- 일반적으로 현물지원은 현금지원에 비해 지원하는 측의 의사반영이 용이하므로 그동안 방위비분담액의 현물지원 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고, 커뮤니티 은행 이자수익 건으로 인해 현물지원의 필요성과 방위비 지원금 집행에 대한 검증이 더욱더 강조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제9차 방위비 분담협상은 방위비 분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포함되었으며, 특히 미군측이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와 「현금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하고 국방부 및 국회에 제출 및 보고하기로 함
- 하지만 제9차 협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에서 양국은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의 제9항에 따라, 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 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 현금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국회비준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여 큰 논란이 된 바 있음

11)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 제출자료(2017.8.11.)

나. 일본

- 일본 방위성은 주일미군의 주둔비용을 포괄 범위에 따라 ‘주일미군 주둔경비’, ‘주일미군 주둔관련 경비’, 그리고 ‘주일미군 관계경비’로 분류하고 있음¹²⁾([그림 1] 참조)
 - 주일미군 주둔경비는 SMA에 의한 지원과 SOFA에 의한 지원경비 중 시설개선비와 노무비 등 직접지원비를 포함하며, ‘배려예산’으로 통칭됨
 - 주일미군 주둔관련 경비는 배려예산에다가 SOFA에 의한 나머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포함하여, 주일미군관계경비는 오키나와에 관한 미·일 특별행동위원회(SACO)¹³⁾경비와 미군재편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주로 ‘주일미군 주둔경비’만을 방위비분담으로 포함하나, 일본의 경우 포괄적인 경비부담을 주장하고 있음

[그림 1] 주일미군관련 경비(2017년)



자료: 「Defense of Japan」, 일본 방위성(2017), 285쪽

12) 백재욱, 「일본의 방위비분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국가전략』 제23권 제3호, 2017, 129쪽

13)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에 의한 소녀 성폭행 사건에 항의하는 현민들을 달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미 해병대 후텐마 비행장 등 11개 기지를 반환하겠다는 보고서를 내었으나, 현 내의 헤노코 해안으로의 이전으로 결정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음

-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현물지급이 원칙이며 노무비와 같이 현금이 지출되는 경우에도 고용 및 임금지급을 일본 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현금이 미군 측에 이전되지 않으며, 모두 일본 내에서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시설개선비(Facilities Improvement Project, FIP)의 경우에도 일본이 사업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적 전용여지가 적고, 미군 종사 노동자도 일본 정부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인건비 전용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적음¹⁴⁾
- 실제로 일본 주둔 미군의 경우 각 군별로 시설보수·신축 등의 소요를 취합하여 요코다 주일미군 사령부의 J42C 건설반을 경유, 방위시설청의 시설 구역 정비 대책본부로 접수되어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독일

- 독일의 경우 주둔미군에 대한 주둔국 지원과 NATO 회원국으로서의 비용분담 등으로 대별될 수 있음. 그러나 과거 1957년까지는 ‘상계지불협정(Offset)’을 맺어 미군 주둔비용 상당의 무기나 채권을 구입한 적이 있으나, 종료 이후에는 미군에 대한 분담금 성격의 지원은 없거나 미미한 상황임
- 「NATO SOFA 보충협정」에 따르면 NATO 군이 독일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국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주둔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한 초래비용(Folgekosten)을 부담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행정비용, 지원 및 보조금, 투자금 등이 포함됨
- NATO 회원국으로서의 공동비용(commom funding) 분담으로 민간예산, 군사예산, 안보투자프로그램(NSIP, NATO Security Investment Programme)을 부담하는데 민간예산은 독일연방 외무부, 군사예산과 NSIP예산은 독일 국방부에서 예산편성과 지출을 담당하고 있음¹⁵⁾

14) 박기학(2017),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경기: 한울엠플러스(주)), 176쪽; 박휘락(2014),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용 방향”,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4.2.21., 44쪽

15) 독일의 NATO에 대한 공동분담비율(2014.1.1.~2015.12.31.)을 보면 민간예산 14.5053, 군사예산 14.6439, NSIP예산 14.6439로 미국(각 21.7394, 22.2000, 22.200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음 (http://www.nato.int/nato_static_fl2014/assets/pdf/pdf_2014_06/20140611_20140601_NATO_commo)

2) 한·일·독 분담금 직·간접 지원 및 제공방식 비교

- 한국·일본·독일은 모두 SOFA를 근거로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방위비분담을 위한 SMA를 체결하여 주둔 미군을 지원하고 있음([표 6] 참조)
- 한편, 독일은 SMA가 없으며, 과거와는 달리 주둔군으로서의 미군을 지원하기보다 NATO의 공동방위를 위한 분담금 지출이 대부분임

[표 6] 한국,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근거 및 구성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지원 근거	SOFA	직접 지원	- 주한미군에 의한 공무피해보상	- 시설개선비(건설+운영비) - 기지주변민원해결을 위한 시설건설정비 - 국유/사유지임대료 - 기지이전 비용 - 주일미군에 의한 공무피해보상 - 복지비용 등 노무비	- 임대료 - 기지이전 비용분담 - 주둔미군부대 실직자 생활안정지원
		간접 지원	- 시설과 부지 제공 - 면세, 조세감면 등	- 부지 제공 - 면세 혜택	- 토지 및 시설 공여 - 면세 혜택
	SMA	- 인건비 -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포함) - 군수지원비	- 고용원 인건비 - 수도, 전기, 가스료 - 훈련장소 이동 및 재배치 경비	SMA 없음	
결정방식			총액형	소요총족형	소요총족형
제공방식			- 현금 (인건비 및 일부 비용) - 현물	- 현물 또는 현금 - 일본정부 직접 집행	- NATO 분담금이 대부분 - 그 외 99%가 간접지원

박휘락, 「주요 미군주둔 국가(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3, 111쪽

-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의 경우도 독일과 일본은 항목별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소요총족형인 반면, 한국은 총액을 결정 후 필요한 항목에 사용하는 총액형 방식임
- 제공방식의 측면에서도 한국이 ‘현금+현물’ 지원을 하는데 반해 독일의 경우 주로 NATO 분담금제공 + 간접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 정

부가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군 측에 현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표 7] 참조)

-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경우 미군이 노무자를 직접 고용하나, 일본은 일본정부에 의해 고용되므로 인건비의 경우도 미군에 현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군사시설 건설의 경우도 주한미군의 경우 사업의 설계 및 선정을 미군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집행과 관련하여 의회의 통제가 강조되는 경우를 찾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우리와 달리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¹⁶⁾

[표 7]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분담 운용구조

구분	분담 여부	운용방식		비고
		주둔국	방식	
인건비	분담	한국	직접고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 노무관리 주체 • 일본정부에 의한 고용·노무 관리 • 비세출기관 직원 인건비 분담
	분담	일본	간접고용제	
군사 건설	분담	한국	미: 사업선정·설계 한: 계약, 공사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측 주도적 운용(SMA)
	분담	일본	일: 설계 등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측 주도적 운용(SOFA)

자료: 백재옥, 「일본의 방위비분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국가전략』 제23권 제3호, 2017, 147쪽

16)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박기학,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경기: 한울엠플러스(주)), 2017.
- 박휘락, 「주요 미군주둔 국가(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분담 비교연구」, 『국회예산정책처연구용역보고서』, 2013.
- _____,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용 방향」,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외교통일위원회, 2014.
- _____, 「한국 방위비분담 현황과 과제분석」,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2014.
- 백재옥, 「일본의 방위비분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국가전략』 제23권 제3호, 2017.
-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RL3343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2.16.)
- 「Defense of Japan」, 일본 방위성(2017)
- Hoff, Rachel, 「Burden-Sharing with Allies: Examining the Budgetary Realities」, American Action, Forum, 2016.11.1.

박병석 의원 귀하

주한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김도희·박명희
Tel.788-4556/Fax.788-4559
E-mail: doheekim@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현황 및 개선 방안 관련,

1. 주한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현황(언론보도 및 환경부, 정부부처 발표자료 종합)
2. 환경오염에 따른 현재까지 투입된 복구비용 및 향후 예상비용(각 기지별로)
3. 주한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일본의 주한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현황과 일본 정부의 대응
5. 주한미군 공여지 환경오염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환경오염 복구비용만큼 금액을 감액하는 등의 방안)
(회답일 2018. 9. 21.)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현황 및 개선방안 관련 자료와 문헌을 참조하여 회답함

■ 주요내용

- 2018년 현재 주한미군 이전 대상기지 총80개소 중 54개를 반환받았으며, 2015년 부산 DRMO를 마지막으로 신규로 반환된 기지는 없음
- 2018년 현재 54개 반환기지 중 23개소의 오염정화작업이 완료되었고, 1개소(캠프 캐슬)는 정화작업이 진행 중으로 실 복원비용은 약 2,193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의 경우 미일지위협정의 「환경보충협정(環境補足協定)」을 통해 과거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환경관리를 위한 미·일간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
-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에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비용을 분담금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목차

1. 주한미군기지 오염 현황 및 복구비용 _02
2. 주한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현황과 일본 정부의 대응 _05
3. 주한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문제점 및 해결방안 _08

1. 주한미군기지 오염 현황 및 복구비용

- 2018년 현재 주한미군 이전 대상기지 총80개소 중 54개를 반환받았으며, 2015년 부산 DRMO를 마지막으로 신규로 반환된 기지는 없음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반환된 54개 기지에 대한 조사결과 국내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한 기지는 25개소로 이 중 23개소의 오염정화작업이 완료되었고, 1개소(캠프 캐슬)는 정화작업이 진행 중으로 ([표 1] 참조) 이들에 대한 실 복원비용은 약 2,193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짐¹⁾
- 2017년 이후 파주 자이언트 기지의 경우 원래 경기도교육청 소관 부지여서 국방부 정화작업에서는 제외되었는 부지에 대해 법원이 국방부의 정화책임을 인정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화작업이 시행되었음
- 또한 의정부의 캠프 시어즈의 경우에는 원래 의정부저유소 부지를 육군이 군사시설지역(제3지역)으로 정화하였으나, 이후 ‘의정부발전종합계획’에 이 부지가 주거지역(제1지역)으로 포함되게 되면서 추가적인 정화작업이 시행되었음²⁾

[표 1] 미군기지 오염현황 및 복원비용

구분	기지명	반환연도	반환면적 (m ²)	오염면적 (m ²)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물질)	정화기간	재원 및 예산 (억원)	정화업체/담당부서
1	파주 에드워드	2007	251,549	7,609	TPH, 아연	'09.8. ~ '11.12	778 (837)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어촌공사/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2	파주 개리오웬	2007	284,229	16,823	TPH, BTEX, 납, 아연, 카드뮴			
3	파주 하우스	2007	636,088	12,624	TPH, 납, 아연, 카드뮴			
4	파주 스탠튼	2007	271,000	8,341	TPH			
5	파주 자이언트	2007	171,179	8,043	TPH			
6	캠프 그레이 에넥스	2007	8,660	1,500	TPH, BTEX			
7	용산유엔 컴파운드	2007	53,458	785	TPH			
8	춘천 페이지	2007	639,342	12,410	TPH, BTEX			

1)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제출자료(2018.09.20.)
 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담당자와의 유선통화(2018.9.21.)

9	동두천 님블	2007	58,274	2,120	TPH	'09.8. ~ '11.12	944 (1,041) 주한 미군 기지 이전 특별 회계	환경공단/ 국방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
10	의정부 라과디아	2007	136,782	1,310	TPH, BTEX, 아연, 니켈			
11	의정부 카일	2007	145,183	12,649	TPH			
12	의정부 시어즈	2007	95,080	8,270	TPH, BTEX, 납, 아연			
13	의정부 에세이온	2007	207,637	18,020	TPH, BTEX			
14	의정부 폴링워터	2007	49,586	1,432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			
15	하남 콜번	2007	306,772	1,052	TPH, BTEX, 아연, 니켈			
16	매향리 사격장	2007	23,717,140	4,690	TPH, BTEX, 납, 아연, 카드뮴, 구리, 니켈	'11.4 ~ '12.7	143.5 주한 미군 기지 이전 특별 회계	부산시/ 국방부 (주한미 군기지 이전 사업단)
17	캠프 하야리아	2010	534,939	50,234	TPH, BTEX, 카드뮴, 비소, 납, 아연			
18	캠프 캐슬	2015	156,261	33,539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카드뮴, 불소	'15.5 ~ 정화중	197 주한 미군 기지 이전 특별 회계	농어촌 공사/ 국방부 (주한미 군 기지이 전 사업단)
19	파주 그리브스	2007	306,772	1,052	TPH, BTEX, 납, 구리	'12.1 ~ '14.11	29.8 일반 회계	환경공 단/ 국방부 (공군)
20	파주JSA (보니파스)	2007	143,052	2,102	TPH, 납, 아연			
21	파주JSA (리버티벨)	2007	66,404	323	TPH, 납			
22	파주 찰리블럭	2007	28,000	85	TPH			
23	파주 자유의다리	2007	57,750	197	TPH	'12.7 ~ '13.11	2.7 일반 회계	
24	남제주 맥냅	2007	49,810	618	TPH	'09.9 ~ '10.9	4.9 일반 회계	(주)원택 / 국방부 (공군)
25	부산 DRMO	2015	34,925	2,620	TPH, BTEX, 납, 아연, 카드뮴, 비소, 수은, 구리, 니켈	정화미착수		-

주: 파란색 글씨 부분이 2017년 이후 추가된 비용임

- 부산 DRMO(재활용 및 매각처리소)의 경우는 2015년에 반환되었으나 여러 이견으로 인해 정화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6년 4월의 환경오염조사결과 벤젠, 톨루엔 등 기름성분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을 합해 13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염 면적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여 오염정화비용은 6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하지만,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등 어느 부처도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³⁾
- 원주시의 캠프롱의 경우, 2010년 6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여 원주시가 국방부와 토지매입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 665억원의 토지 매입비용을 완납하였으나, 토양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환경부와 미군 사이의 이견이 조정되지 못해 아직 부지가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⁴⁾
 - 특히, 캠프롱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TPH(석유계 총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아눈 기지 내 유류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기름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⁵⁾
- 한편,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의 경우 국방부가 2009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오염부지 8,270m²에 대해 토양정화를 완료하고 의정부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으나 이 부지에서 TPH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음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적법절차와 기준을 준수해 부지 토양정화를 완료하고 이전되었고, 이전 후 6년이 지났으므로 오염 원인에 대해 새롭게 조사해 보아야한다는 입장이나, 의정부시는 소유권 이전 후 펜스를 쳐 개발행위가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다른 토양오염원인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음⁶⁾

3) "반환3년 부산 미군기지 기름·중금속 오염 방치한 정부," 한겨레, 2017.07.19.

4) 연합뉴스 2018.9.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3/0200000000AKR20180913112800062.HTML?input=1195m>

5) 한국환경공단, 「2017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 토양·지하수 오염평가 결과보고서」(환경부 제출자료 2018.9.20.)

6) 경기일보 2018.4.12.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64371>

- 이 외에도 환경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기초조사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된 총 110회의 조사 중 66회의 조사에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원이 검출되었고 일부지역에서는 이전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오염원이 새롭게 검출되기도 함
- 상기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오염원이 검출된 기지는 인천 부평지역의 캠프마켓 인근 주변의 토양(TPH, 크실렌, 구리, 납, 아연, 니켈)과 지하수(TPH, 납)였고, 재조사가 실시된 캠프카일(의정부), 캠프캐슬(동두천), 캠프케이시(동두천), 캠프호비(동두천) 등 일부지역에서 새로운 오염원이 검출됨⁷⁾
- 최근에는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 캠프 캐롤(Camp Carroll)의 식수가 발암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에 오염되었으며, 아울러 이 기지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낙동강 유입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미군의 자체조사결과 드러났으나, 한국정부는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국내외에 식수에 대한 과불화화합물 수질기준 항목을 설정한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환경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임⁸⁾

2. 주일미군 공여지 환경오염현황과 일본 정부의 대응

1) 주일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 일본 방위성에 의하면, 2018년 3월 기준 주일 미군전용 시설은 전국 78개소 263,192㎢에 해당함. 이 중 31시설 184,961㎢가 오키나와현(沖縄県)에 집중됨
- 주일미군 시설의 70%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오키나와 본토 면적의 14%에 해당함⁹⁾
- 주일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미·일 양국은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第6条に基づく施設及び区域並びに日本国における合衆国軍隊の地位に関する協定, 이하 미·일지위협정」에 근거

7) 메디컬투데이 2017.10.12.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7685>

8) 시사저널 2018.7.23.

9) 防衛省 http://www.mod.go.jp/j/approach/zaibeigun/us_sisetsu/pdf/menseki_h300331.pdf

하여 미·일합동위원회 혹은 그 하부기관으로 설치된 환경분과위원회(ESC : Environmental Subcommittee)를 통해서 대처하도록 하고 있음

-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로 반환된 이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가 부각되면서 1978년부터 ‘주일미군시설·지역 환경조사’가 매년 실시됨
- ‘주일미군시설·지역 환경조사’는 미·일 합동위원회가 합의한 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기지의 수질과 대기를 수집·파악함. 오염이 확인되면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미국 측에 대책을 요구해옴. 오키나와의 경우 배수(排水)조사를 오키나와 현에 위탁하여 실시함
- 오키나와에서는 2012년 구키가미촌(国頭村) 하수시설, 13년 후텐마(普天間)비행장 배수구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된 바 있음
- 기타 2000년대 오키나와 미군기지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는 [표 2]와 같음

[표2] 2000년 이후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주요 환경오염 사고

일시	장소	내용
2000년 1월	카데나(嘉手納)탄약고	탄약고 보일러 기름유출 18시간
2002년 1월	캠프 츠케랑(瑞慶覽)	타르물질 함유 다량의 드럼통 발견, 토양오염
2003년 4월	캠프 쿠아에(桑江)	토양에서 비소와 납 등의 유해 물질을 검출
2006년 11월	요미탄손(読谷補助)비행장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납, 불소 등의 유해 물질을 검출
2009년 7월	캠프 코트니	펌프 결함으로 약 6 만 2,000 리터의 폐수 유출
2013년 6월	가데나(嘉手納)기지	다량의 드럼통 발견 환경기준 초과 다이옥신발견

출처: 毎日新聞 2017年 11月 16日

2) 일본정부의 대응

- 2000년 9월 11일 양국정부는 환경보호가 중요하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 주일미군시설 지역주민의 건강 및 미군관계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공통의 목적으로 하는 「환경원칙에 관한 공동발표(環境原則に関する共同発表)」를 함¹⁰⁾
- ▲ 일본환경관리기준(Japan Environment Governing Standards, JEKS)의 설정, ▲ 정보교환과 출입조사, ▲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 환경에 관한 협의 등 4개 항목이 포함됨

10) 防衛省 <http://www.mod.go.jp> 「環境原則に関する共同発表」

- 일본환경관리기준(JEGS)은 주일미군에 의해 작성되는 환경기준으로서, 미·일 양국의 관련 법령가운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선택하도록 함. 이에 따라 일반적인 일본의 기준을 상회하도록 함
 - 양국정부는 공공환경조사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기지의 출입을 허용함
 - 미국정부는 주일미군이 원인이 되어 주민의 생활의 실질적 위협이 된 오염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화에 즉각 대응함
- 미·일 양국정부는 주일미군시설에 관련된 환경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28일 미일지위협정의 「환경보충협정(環境補足協定)」에 합의함
- 방위성은 「환경보충협정」을 「미일지위협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법적 구속력이 담보된 교섭의 결과로서, 과거 운용개선과는 다르다고 평가함¹¹⁾
 - 「환경보충협정」은 미일합동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2000년 ‘환경원칙에 관한 공동발표’ 등에 의한 미일 간 환경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정보공유, ▲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 ▲출입 절차의 작성 및 유지, ▲협이에 대한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관리를 위한 미·일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음. 출입조사 관련 반환이 확정된 기지의 경우, 반환 7개월 전부터 출입조사가 허용되도록 설정하고 있음. 한편, 오키나와 현은 반환 3년 전부터 출입조사권을 요구한 바 있음¹²⁾

[표 3] 「환경보충협정」의 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정보공유	- 양국은 입수 가능한 정보를 상호 제공함
환경관리기준의 설정 및 유지	- 일본환경관리기준(JEGS)을 설정 및 유지하고, 동 기준은 양국 혹은 국제협약의 기준 가운데 가장 보호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채용함 환경관리기준은 누출에 대한 대응 및 예방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도록 함
출입절차의 작성 및 유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누출)가 발생할 경우 및 시설·지역의 반환에 관련한 현지조사(문화재조사를 포함)를 실행하는 경우 일본정부는 미군시설 및 지역에 적절한 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수속 함
협의	- 「환경보충협정」의 실시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미일합동위원회에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함

출처: 横山絢子. 2016. “日米地位協定の環境補足協定” 『立法と調査』. No 376. p. 80

11) 防衛省. 2018. 『防衛白書』. p.305

12) 毎日新聞 2015年 9月 30日

- 한편, 2014년부터 미군기지 내부 조사가 불가능해지고, 외부조사만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기지로부터 흐르면서 외부 측정 시 오염 정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 중임¹³⁾

3. 주한미군 공여지 환경오염 문제점 및 해결방안

- 2018년 현재 반환대상기지 총 80개소 중 54개소를 반환받은 이후 더 이상 반환된 기지가 없으며, 반환된 기지 중 25개소가 오염되어 현재까지 2,193억 원이 오염정화에 투입되었음
 - 따라서 기지반환 및 오염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단할 수는 없으나 정화를 마친 지역에서 추가적인 오염이 발견되거나 재조사 결과 새로운 오염원이 발견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오염정화비용은 1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음¹⁴⁾
- 한편, 현재까지 기지이전에 따른 토양정화사업의 경우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오염을 우선 복구하고 그 비용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금액의 일부를 미국 측에 청구하나 미국 측은 현재까지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예를 들면, 미군측은 기본적으로 환경조사와 정화 관련된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원주 캠프 롱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1차조사비용 3,263만6천원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2003년 4월 원주시에 지급한 예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2차 조사비용 및 정화비용 부담은 거부하였음¹⁵⁾

13) 毎日新聞 2017年 11月 16日 기지내부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해 환경성은 미일 안보 조약에 의거한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음

14) 이 뿐만 아니라 용산미군기지의 정화비용만으로도 1조원이 될 수 있다는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한겨레 2017.7.12.)

15) 이 사건에 대한 비용청구 거부에서는 SOFA 제23조 5항(가)와 제5조 2항을 근거로 제시하였음.

- 23조 5항: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 조 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 환경오염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근거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사전적인 예방 및 사후적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 SOFA는 명시적인 환경조항이 부재한 상황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경우 미일지위협정의 「환경보충협정(環境補足協定)」을 통해 과거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환경관리를 위한 미·일간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주일미군이 원인이 되어 주민의 생활의 실질적 위협이 된 오염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에 즉각 대응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또 다른 대안으로서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환경오염 복구비용 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일반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은 직접지원비용으로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성되나, 간접적으로 한국은 부동산지원, 카투사운영비,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지원비용, 환경오염 복구비용 등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미국 측은 방위비분담률을 계산할 때 후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측이 분담률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비인적주둔비(NPSC)¹⁶⁾의 상세구성항목에서 이러한 간접지원 항목들은 배제된 채 미국 측이 자의적으로 분담률을 산정하여 우리 정부의 분담률이 계속해서 저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근거가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왔음
-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에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비용을 분담금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오염자부담원칙으로서 미군측이 환경오염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가)청구는 대한민국의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

- 제 5조 2항: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간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 16) 비용분담은 크게 세금, 토지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등의 간접지원과 미군의 지출비용을 직접지원해주는 직접지원이 있음. 직접지원 중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국에서의 지출비용을 '비인적주둔비(non-personnel stationing cost, 이하 'NPSC')라하며 이의 50%를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함

하는 것이 합당하나,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방위비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환경오염항목을 신설하여 제도적으로 한국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미군측이 나머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경우, 첫째, 현재까지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분쟁으로 환경오염 복구 및 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명목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되지만 국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에 사용될 것이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셋째, 미군측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NPSC의 항목을 구체화하는 계기 즉,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나 NPSC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각종 간접지원을 NPSC에 포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실질적 부담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환경오염조사 및 정화와 관련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박병석 의원 귀하

워싱턴 싱크탱크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김예경·박명희**
Tel.788-4551/Fax.788-4559
E-mail: ykmkim@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외교부 및 KF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현황, 일본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전략, 우리나라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전략의 문제점 및 시사점

(회답일 2018. 9. 18)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외교부 및 KF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현황, 일본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전략, 한국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전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외교부 자료 및 관련 문헌을 토대로 조사하여 회답함

■ 주요내용

-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전략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용역과제 수행 기관이 성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과제를 종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제물에 대한 추후 활용 및 파급 효과 검증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워싱턴 싱크탱크 내에 한국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셋째, 미국의 글로벌 전략, 대중국 전략, 미사일방어전략, 방위사업전략, 미국 주둔 및 배치에 관한 전략 등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외교부 및 KF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현황_02
2. 일본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전략_04
3. 한국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_09

1. 외교부 및 KF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현황

- 한국은 워싱턴 싱크탱크에 대해 외교부, KF, 그리고 민간기관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연구지원·세미나 개최·네트워크 강화 등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1) 외교부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현황¹⁾

- 2018년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요인사 및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우리정책 설명, △학계·언론 분야 주요인사 초청 사업 등 전략적 대미 공공외교 시행
 - ※ 행정부·의회·학계 주요 인사 대상 정책 설명회, 간담회, 강연 등 대미 공공외교 활동 연중 실시
 - 공공외교대사 워싱턴 방문, 싱크탱크, 의회인사 등 대상 정책설명(1월)
 - 지역공공외교과장 워싱턴 방문, 싱크탱크 대상 정책설명(3월, 5월)
 - 1차관 워싱턴 및 보스턴 방문, 여론주도층 대상 정책설명(6월)
 - 2차관 워싱턴 방문, 조지워싱턴대학 강연 및 여론주도층 대상 정책설명(7월) 등
 - ※ 학계 주요인사 초청
 - Johns Hopkins SAIS 대학원 대표단 초청, 간담회 개최(3월) 등

- 외교부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의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 기존의 특정 연구소·한반도 전문가 위주 공공외교에서 벗어나, 주제·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메시지 전달 등 고려
 - * (예시) 평화, 군축, 검증, 비확산, 동맹 등
- 워싱턴 외 타 지역으로의 공공외교 확산 등 인적·지역적 네트워크 다변화 추진
-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 연구소와의 협업 추진을 통한 정책공공외교 시너지 증대 도모

1) 외교부 제출자료(2018.9.18.)

2)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현황

-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은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한국 관련 정책연구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한국 외교정책을 측면지원하고 외교적 외연을 확대한다는 취지임
- KF는 Asia Society, Atlantic Council, Brookings Institution, CATO Institute 등 21개 기관의 한국관련 사업을 지원 중에 있음
 - 2018년 지원 계획에 따르면, Asia Society의 “Advancing the US-Korea Economic Agenda” 사업에 7만 달러, Brookings Institution의 “Asia Transnational Threats Forum” 사업에 10만 달러, CSIS의 “Beyond Parallel Bringing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to Korean Unification” 사업에 9만 달러 등을 지원함

[표 1] KF의 워싱턴 싱크탱크 지원현황(2018년)

#	기관명	사업명
1	Asia Society	Advancing the US-Korea Economic Agenda
2	Atlantic Council	Atlantic Council-Korea Foundation Senior Fellow
3		Next Generation Program
		KF-Atlantic Council forum 2018
4	Brookings Institution	Asia Transnational Threats Forum
5	CATO Institute	Now and Beyond: Exploring the Vast Upside of Korea-US Economic Relations
6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CUA)	Contemporary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Politics in South Korea
7	Carnegie Endowment	Korea Program
8	Center for a New American Studies (CNAS)	North Korea Diplomacy Platform
9	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 (C4ADS)	Mapping Russia-North Korea Overseas Networks
10	Center for Foreign Relations (CFR)	Program on U.S.-Korea Policy

11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Beyond Parallel Bringing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to Korean Unification
12		ROK-U.S. Strategic Forum 2018
13	CSIS-USC	CSIS-USC U.S.-Korea NextGen Scholars Program
14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CFTNI)	Security in Northeast Asia: US-South Korea Dialogue
15	Johns Hopkins SAIS	2018 Johns Hopkins SAIS Strategic Studies International Staff Ride to Korea
16	Mansfield Foundation	Mansfield Foundation Dialogue on Bridging the Divide
17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The China-Russia Entente and the Korean Peninsula
18		Next Generation Leaders and Congressional Outreach
19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NED)	Revitalizing Democratic Citizenship: Learning from Korea's Experience
20	Stimson Center	North Korea in US-China Relations under the Trump Presidency
21	U.S. Association of Former Members of Congress(FMC)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CSGK)

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2018.9.14.)

2. 일본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전략

1) 일본 공공외교의 역사적 추이와 특징

- 일본의 공공외교는 전쟁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경제력에 상응하는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자 전개되었음
-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 이후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안보적 측면의 ‘적극적 평화주의’, 과거사에 대한 ‘역사수정주의’를 강조하는 형태가 부각되고 있음

[표 2] 일본 공공외교의 역사적 추이2)

시기	특징	주요 내용
1950-1960년대	평화주의 이미지 고양	- 일본의 전통문화에 초점을 맞춘 문화외교
1970-1980년대	일본의 경제적 위협론을 불식시키고자 노력	- 일본어 증진, ODA에 문화협력 포함 - 1972년 Japan Foundation 설립 - 일본 ODA예산으로 JF일본어 프로그램 지원
1990년대	경제력에 상응한 국제사회 기여	- 일본 대중문화의 영향력 증대 (Cool Japan) - 1991년 대미 공공외교 전담기관 성격의 JF CGP 설치(500억엔의 추가기금 투입)
2000년대	문화외교	- 문화외교를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시작 - 대중문화와 일본어를 중심으로 한 공공외교
아베 2기 내각이후 (2012년)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전향적 공공외교	- 적극적 평화주의, 역사수정주의 형태가 공공외교에서 표면화

출처: 김태환(2015). p.3 참조 필자 수정

- 일본의 공공외교는 외무성 대신관방(차관보급) 산하의 외무보도관실이 공공외교를 총괄하며 외무성 소속의 해외공보문화원 및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이하 JF)이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임
 - 해당되는 외교부 담당부서로서는 공공외교전략과, 국내홍보실, IT홍보실, 공보실, 보도과, 문화교류해외홍보관, 국제문화협력실, 인사교류실, 해외언론담당실이 있음
- 2014년 10월 “일본 측 기본방침과 대처가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대외홍보를 강화한다”는 각의 결정 이후 2015년 일본 외무성은 ‘전략적 대외홍보’를 국가 3대 과제로 선정함
 - 이에 따라 전략적 대외발신 예산을 대폭 증가(전년 대비 3배 520억엔)시킴
 - 전략적 대외홍보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임 첫째, ‘영토보전과 역사인식을 포함한 일본의 올바른 모습 전파’, 둘째, ‘일본의 다양한 매력 홍보’, 셋째,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확대’임
 - 2015년 『외교청서』는 전략적 대외발신을 통하여 친일파, 지일파를 확대해가고자 하며, 일본의 기본적 입장을 이해받기 위하여 해외 지식층, 싱크탱크

2) 김태환. 2015.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와 한국의 지식외교 대응방안” 「주요국제문제분석」. (2015.6.8.)

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³⁾

- 한편, 외무성은 2011년부터 소셜미디어 발신으로 유명한 인물 및 오피니언 리더를 초대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맥형성과 일본 이해를 추진해 오고 있음
- 2018년 8월 외무성이 발표한 2019년도 예산요구액에는 ‘일본의 전략적 발신 및 친일파·지일파의 육성을 위한 비용’으로 906억엔이 계상됨. 작년 대비 238억엔이 증가한 금액임⁴⁾
- 외무성은 일본의 정책 및 조직을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발신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을 지원해 줄 친일파·지일파를 육성할 목적이라고 밝힘
- 특히 예산이 확대되는 부분은 ▲해외일본어교육의 확충(일본으로의 유입인구 확대 대비 22.2억엔), ▲정보발신체제의 강화(SNS의 효과적 활용 0.8억엔) ▲재팬하우스의 본격적 사업전개임(49.5억엔)
- 재팬하우스(Japan House)는 일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레스토랑, 상점 등도 설치하여 일본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이해의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점시설로서 2017년 4월 상파올로에 개관하였고, 향후 런던과 LA에 개관예정임

2)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

- JF의 대미사업은 주로 글로벌파트너십센터(Center for Global Partnership, 이하 CGP)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CGP는 일본정부차원 대미 공공외교의 핵심 담당기관임
- CGP는 아베총리 부친인 아베신타로(安倍晋太郎) 전 외무대신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1991년 500억엔의 기금으로 공식출범함
- CGP는 냉전후 질서에 일본의 국제적 역할확대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미·일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도쿄와 뉴욕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3) 外務省. 2015. 『外交青書』. p.237.

4) 外務省. 「平成31年度預算概算要求」(2018年 8月), 906억엔 중 641억엔은 ODA임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394744.pdf>

- CGP의 사업은 정책연구(공모조성사업), 전문가지원사업(펠로우십사업),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연구자, 학생, 지역 등)사업으로 구성됨
- 정책연구지원 사업은 대학 및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 사업이며, 전문가 지원 사업은 기성 및 연구자 및 여론지도층에 대한 지원의 성격임
- JF 대미사업은 연간 600만달러 예산에 1991년부터 현재까지 CGP의 전문가지원사업(Abe Fellowship)의 수혜자는 417명임
 - 2018 공모사업은 일본측 4건, 미국측 11건이 선정되었으며, 미국측 11건의 규모는 250,560(USD)임⁵⁾

[표 3] 글로벌파트너십센터 사업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정책연구 지원사업	공모조성사업 및 유력 싱크탱크 지원사업	- 일본 또는 미국의 비영리단체(대학, 연구소, 싱크탱크, NPO등)이 실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지원
전문가 지원사업	아베 펠로우십 프로그램 언론인을 위한 아베 펠로우십	- 학자 및 전문가, 저널리스트 대상 지원 - 지구적 정책과제, 긴급한 현안 과제에 대한 연구 지원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미일지식인 교류사업 폴뿌리 민간교류 일본계 미국인 교류사업	- 미국의 다양한 지적커뮤니티 리더를 일본에 초청하여 미일지식인 네트워크 형성 - 미국 폴뿌리 레벨에서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에 일본 코디네이터를 2년간 파견 - 일본계 미국인 초청사업

출처: The Japan Foundation Center for Global Partnership <http://www.jpf.go.jp/cgp/exchange/index.html>

- 정확한 규모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CGP의 미·일 지식인교류사업 및 펠로우십 사업이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지식인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은 JF 연차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해외의 일본연구 지원 및 지식인교류 사업비용이 조사연구 사업비의 3배 규모임
 - 2015년 이후 일본 정부의 전략적 대외발신의 정책기조는 연간 아베펠로우십 수혜자의 수를 기존의 3배로 확대시켰으며, 조지타운대 및 MIT, 컬럼비아대에 일본연구 및 전문가 채용지원을 위해 일본정부가 각각 500만달러를 제공함⁶⁾

5) The Japan Foundation Center for Global Partnership <http://www.jpf.go.jp/cgp/exchange/index.html>

[표 4] JF예산(2016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단위: 엔)

사업비	금액
문화예술교류사업비	6,509,693,575
일본어교육사업비	5,880,854,534
일본연구, 지적교류사업비	1,949,524,691
조사연구, 정보제공사업비	589,981,869
아시아문화교류강화사업비	3,391,919,305
기타	4,156,612,792
사업비 총액	22,478,586,766

출처: Japan Foundation Annual Report(2016-2017),
<http://www.jpf.go.jp/j/about/result/ar/2016/pdf/dl/ar2016.pdf>

-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는 1972년 JF가 출범한 이래 지속되었으나, 1991년 CGP가 설립되면서 미국의 정책커뮤니티 및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주도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지도급 인사 및 지식인들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 아베 펠로우십의 경우 미국 학자 및 일본 학자를 매년 선발하여 ‘Abe Fellowship Retreat’라는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있음
 - 스트로브 텔벗(Strobe Talbott) 전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은 일본연구에 집중했던 싱크탱크 연구자 및 외교관을 주축으로 하는 미국 내 “국화파(the chrysanthemums)”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⁷⁾
- 한편, 일본의 대미 공공외교의 효과로 지목해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5년 전후(戰後) 70년 미·일 양국국민의 상호인식조사를 실시한 여론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일본에 대한 신뢰도는 68%로서 한국(49%), 중국(3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⁸⁾

6) 일본 정부의 이러한 사업지원은 1973년 미국 10대 명문대에 연구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00만달러씩 기부한 이래 40년만임

7) 중앙일보. 2014년 9월 23일

8) Pew Research Center americans-japanese-mutual-respect-70-years-after-the-end-of-wwii
<http://www.pewglobal.org>

3. 한국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1) 한국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전략의 한계

- 한국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전략에는 공공외교 성과 평가, 지원 대상 기준, 연구 주제 등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⁹⁾
- 첫째, 현재 공공외교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다보니 공공외교의 성과를 양적 투입 및 산출로 단순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음
 - 단순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횟수를 근거로 공공외교 활동을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나타나는 공공외교 효과에 대한 성과 평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둘째, 정책 연구 용역 과제 지원이 한국 혹은 한반도 전문가 그룹에 편중되거나 연구주제 범위를 한반도로 한정하는 것이 정책공공외교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임
 - 한반도 전문가 그룹은 미국의 대외정책 형성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가 아닐 수 있으며, 한국을 주요 변수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임

2) 한국의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 전략의 개선방안

- 첫째, 워싱턴 싱크탱크 공공외교의 성과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 용역과제 수행 기관이 성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과제를 종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제물에 대한 추후 활용 및 파급 효과 검증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워싱턴 싱크탱크 내에 한국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워싱턴 싱크탱크 내에 한국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함
 - 현재 워싱턴 내 한국전문가는 CSIS 한국석좌 빅터 차(Victor Cha) 박사, 브루킹스 한국 석좌 박정현 박사, CFR 한국 프로그램 담당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헤리티지 재단의 한국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Bruce

9) 우정엽, "워싱턴 싱크탱크에 대한 공공외교 평가 및 전략", 『세종정책브리핑』, 2018.5.10.

Klingner) 정도이며, 우드로 윌슨 한국프로그램이 상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의 사례와 같이 한반도 연구 및 전문가 채용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미국의 글로벌 전략, 대중국 전략, 미사일방어전략, 방위사업전략, 미국 주둔 및 배치에 관한 전략 등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외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의 입장이 그들의 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박병석 의원 귀하

해외 주요국 행정직원 제도 운영현황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김예경·박명희
Tel.788-4551/Fax.788-4559
E-mail: ykmkim@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해외 주요국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제도, 행정직원 선방방법 및 직원평가방법, 우리나라 재외공관 행정직원 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 등 조사

(회답일 2018. 9. 17)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한국 재외공관 행정직원제도 운영현황, 해외 주요국 재외공관 행정직원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한국 재외공관 행정직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여 회답함

■ 주요내용

- 재외공관의 업무실태 조사를 통해 행정직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준과 원칙에 의한 행정직원 배치 및 관리가 필요함
 - ‘행정직원 정원표’ 등 정원 관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토대로 적정한 예산배분을 통해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해 임금·복지 등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목차

1. 한국 재외공관 행정직원제도 운영현황_01
2. 해외 주요국 재외공관 행정직원제도 운영현황_04
3. 한국 재외공관 행정직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_15

1. 한국 재외공관 행정직원제도 운영현황

1)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련 규정 및 현황

-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훈령)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 지침」에 따라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직원’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하며, 수행업무에 따라 일반직 및 전문직 행정직원과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직 행정직원은 비서, 교환원, 사무 및 민원 행정보조, 운전원, 노무원, 요리사 등을 말함
 - 전문직 행정직원은 통·번역, 공관 업무 수행 관련 분야에 대한 각종 조사·분석 등을 담당함
 - 선임연구원은 정무, 경제통상, 문화홍보 등 공관업무 관련 분야별 전문적인 정보 수집, 분석·조사, 연구·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함
- 2018년 7월 현재 183개 재외공관에 배치되어 있는 행정직원은 3,190명이며, 선임연구원 43명, 전문직 행정직원 194명, 일반직 행정직원 2,953명임
 - 2017년 현재 재외공관별 국적별 행정직원은 3196명 가운데 한국인 1,423명, 외국인 1,773명임

2) 재외공관 행정직원 보수 및 처우

- 재외공관 행정직원 보수 및 처우(정규직 여부)는 행정직원 직종별(선임, 전문직, 일반직) 초임 상한 내 채용예정 행정직원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음

[표 1] 재외공관 행정직원 보수 및 처우

직종	자격요건(수행업무)	초임 상한액	비고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자 · 변호사 등 자격소지자	연 7만불 이내	· 기본급, 주거보조비, 특수지수당,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 연봉에 포함
	· 석사 후 5년 경력자 · 전문직 5년 경력자로서 업무 고성과자	연 6만불 이내	
전문직	· 석사학위자 · 학사 후 5년 경력자 · 통·번역 가능자	월 2,650불 이내	· 주거보조비: 월 1,000미불 지급(한국국적자에 한함)
일반직	· 행정보조, 비서, 운전원, 노무원 등	월 1,750~2,150불 이내	· 특수지수당: 월 450불 ~1,000미불 · 시간외 수당: 지급

출처: 외교부 제출자료(2018.9.13)

3) 행정직원 선발과정

□ 한국인 행정직원(일반직)의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음

○ 자격요건

- 영어 능통자 우대, 행정업무 유경험자 우대, 컴퓨터 활용(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능통자, 미국 체류 및 공관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이 가능한자 등임

○ 선발과정

-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면접 실시
- 채용후보자는 본부로부터 채용승인 받은 후 최종 채용 확정

4) 2018년도 재외공관 행정직원 처우개선 조치

□ 2018년도 행정직원 처우개선 내역

○ 행정직원 기본급 인상

-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전 재외공관 평균 4% 인상(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인상률 적용)

○ 의료복지 확대

- 전지의료검진 대상공관 확대: 2017년 60개 → 2018년 87개 공관
- 의료지원서비스 대상공관 확대: 2017년 112개 → 2018년 120개 공관
※ 의료지원서비스: 긴급 의료 이·후송, 의료상담 서비스

○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규직화 실시

- 2018년 8월 1일 이후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에 신규(교체) 채용된 한국 국적 행정직원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별도의 정규직 전환 절차 불요)

○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초과근무 관리 방안 마련
※ 행정직원 보상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 향후 행정직원 처우개선 계획

- 외교부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기준 마련 등을 통해 행정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임
- 행정직원 보수체계 정비(직무급제 또는 호봉제 도입 등 검토)
- 현행 주거보조비 체계 개선 검토 등
- 인사관리 전반(채용 등)에 대한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예정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 해외 주요국 재외공관 행정직원제도 운영현황

1) 미국

가. 행정직원 현황

□ 행정직원 현황¹⁾

- 2017년 12월 31일 현재 미국은 50,225명의 행정직원을 주재국 현지에서 채용하

1) Additional Information for Job Applicants,

<https://jp.usembassy.gov/embassy-consulates/jobs/jobs-resources/>(검색일: 2018년9월15일)

고 있으며, 미 국무부 인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임²⁾

- 미국의 재외공관 현지 직원 채용 과정은 동등한 경쟁조건으로 이루어짐
- 다만 미국은 동등한 자격 요건이 제시되는 경우 미국 외교관 가족이나 재향군인을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USEFM, EFM, MOH, OR, NOR 등의 순서로 우선해서 선발하고 있음
- 미국외교관가족(USEFM): 미국 외교관 가족으로 지정된 자로 다음 범위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대해 직접 채용
 - 미국 시민
 - 최소18세 이상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
 - 미국 해외 근무지에 영구 임명되거나 주둔하는 외교관, 민간 공무원, 또는 군인, 혹은 주한 미국대사 권한 하에 있는 미국 정부 산하기관과 연관되어 해외로 임명된 자의 출장 명령서에 포함되어 있는 자
 - 신원 보증인 또는 군인의 해외 근무지, 혹은 승인된 해외 피난처나 피난 대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미국 민간 공무원, 외교관 혹은 군인 경력으로부터의 미국연금이나 보호금을 받지 않는 자
- 외교관가족(Eligible Family Members, EFM)
 - 주한 미국대사 권한 하에 있는 미국 외교기관의 해외 공관 또는 미국 정부 산하기관의 해외 근무지에 영구 임명되거나 주둔하는 외교관, 민간 공무원 혹은 군인의 출장 명령서에 포함되어 있는 18세 이상되는 자로, 위에 제시된 미국 외교관 가족으로 지정된 자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가족구성원(Member of Household, MOH)
 - 동반가족이지만, 해외 근무지에 영구 임명되거나 주둔하는 외교관, 민간 공무원, 또는 군인의 출장 명령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
 - 가족 구성원으로서 주한 미국대사에게 신원보증인에 의해 신고된 자

2) Cory R. Gill, "U.S. Department of State Personnel: Background and Selecte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May 18, 2018.

- 신원보증인과 함께 해외 근무지에서 거주하는 자
- 정규거주자(Ordinarily Resident, OR)
 - 주재국의 국민, 혹은 주재국을 주 거주지로 두며 국내에서 취업에 필요한 취업 및 거주허가를 받은 타국적을 가진 자
- 비정규거주자(Not-Ordinarily Resident (NOR))
 - 출장 명령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한 미국대사의 권한 하에 있는 외교관, 민간 공무원, 그리고 군인의 미국 외교관 가족으로 지정된 자 및 미국 외교관 가족 대상자 혹은 외교 특권과 면책 특권을 지닌 자

나. 행정직원 지원자격 및 채용 절차

□ 지원자격 요건

- 한편 해외 채용의 경우 8가지 자질(8 Qualities of Overseas Employees)을 갖춘 자를 선발하고 있음³⁾
 - 구체적으로는 평정 및 진실성, 문화 적응력, 변화수용 및 진취성, 경력 및 자발성, 정보 통합 및 자원 활용, 재치, 기획 및 조직력, 협력 및 화합 등임
- 언어 능력
 - 영어는 EIKEN, TOEIC, TOEFL, UNATE, Versant 성적이 유효하며, 5년 이내 성적을 제출해야 함

[표 2] 언어 자격 요건(영어)

	EIKEN	TOEIC	TOEFL	UNATE	Versant
Level V(Professional/Translator)	1	900	610	A/A+	68
Level IV(Fluent)	1.5	850	590	B	63
Level III(Good Working Knowledge)	2	650	520	C	59
Level II(Limited Knowledge)	3	400	435		
Level I(Rudimentary)					

3) HR/OE/PC, 8 Qualities of Overseas Employees, June 2017.

- 일본어 등 기타 언어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의 성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행정직원 선발과정⁴⁾
 - 초빙공고 → 지원서 검토 → 고용사무실: 시험후보자리스트 작성 →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 면접 → 고용조건 제시 → 의료 및 보안 심사 → 최종 채용 제안 → 고용 서류 마무리

다. 급여 및 근무조건

- 급여⁵⁾
 - 사무행정직원(주한미국대사관의 경우)의 경우 현지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한화 8,194,223~57,291,345원을 지급받음
 -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하며, 13일의 연차유가를 받음
 -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음
 - 비서(주한미국대사관의 경우)는 기밀문서를 다루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외교관가족(USEFM) 만을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미화 32,378~47,548 달러를 지급함⁶⁾
- 근무조건
 - 고용보험, 상해보험 등의 적용을 받음. 그러나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은 포함하지 않음
 - 한편 행정직원에 대한 보상은 「연방직원보상법(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 FECA)」에 따라 지급함
 - 구체적으로는 급여수입손실, 의료비지출, 인명손실, 외상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음
 -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해외에서 미

4) Recruitment Process, <https://ge.usembassy.gov/embassy/jobs/recruitment-process/>(검색일: 2018년9월15일)

5)

6) <https://kr.usembassy.gov/embassy-consulate/jobs/>(검색일: 2018년 9월 17일)

국 정부에 의해 고용된 행정직원이나 명예롭게 은퇴한 직원에게는 ‘특별이민자 지위(special immigrant status)’를 부여함

- 현지채용 행정직원의 휴가⁷⁾

[표 3] 현지채용 직원 휴가

휴가 유형	주당 40시간 근무	주당 42시간 근무	주당 48시간 근무
연차 휴가	168시간	176시간	201시간
병가	104시간	109시간	124시간
장기 병가	208시간	294시간	336시간
출산 휴가	14주	14주	14주
특별 휴가	3일	3일	3일

2) 영국

- 영국은 현재 9,200명의 현지 채용 행정직원을 고용하고 있음⁸⁾
- 재외공관 행정직원은 직원별로 급여 수준이 다름⁹⁾

[표 4] 영국 외교부 공무원 급여 등급

FCO 봉급 등급	복무 등급	최저(파운드)	최고(파운드)
A1	행정보조	18,337	18,337
A2	행정직원	19,805	21,912
B3	행정관	21,889	27,658
C4	고등행정관	26,640	32,834
C5	고급행정관	33,428	40,905
D6	7급	43,967	56,339
D7	6급	55,434	68,539

- 근무조건

- 영국은 현지 채용 직원에게 ‘글로벌 최저 기준(Global Minimum Standard)’에 따른 휴가를 제공함
 - 휴일을 포함해 연간 30일까지 휴가를 제공하고 있음¹⁰⁾

7) U.S. Embassy Rangoon: Benefits & Allowance for Locally Employed Staff

8) A Short Guide to the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June 2015, p. 9.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5/08/Foreign-Commonwealth-Office-short-guide1.pdf>

9)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05251/0637-15_29_October_2015.pdf

10) Local Staff Charter, https://static.wcn.co.uk/company/fco/ls_charter.pdf(검색일: 2018년9월16일)

- 한편 출산 휴가 12주, 남성 육아휴가 10일, 입양휴가 12주, 재량 혹은 특별 휴가 5일, 연수 5일 등임
- 한편 건강보험, 연금, 교육, 퇴직금(generous leave entitlement)등의 혜택을 제공함¹¹⁾
- 채용 절차 및 평가
 - 해외 행정직원의 채용은 「헌법개혁과 거버넌스법 2010(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중앙인사위원회채용원칙(civil service commission's recruitment principles)」에 따라 진행됨¹²⁾
 - 공관장 등을 제외하면 공개경쟁으로 진행됨
 - 현지채용 직원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직원에게는 기본급, 연차휴가, 개발 기회 등에서 보상이 이루어짐¹³⁾
 - 연간직원평가지시스템(annual staff appraisal system)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 짐

3) 중국

가. 중국 재외공관의 인적구성

- 중국 재외공관의 인적 구성은 외교관, 행정기술원, 복무원, 개인고용인 등으로 구분됨¹⁴⁾
- 외교관은 면책특권을 갖는 외무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들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게 됨
- ‘행정기술원’과 ‘복무원’은 한국의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해당하며, 외교관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해당하며, 공무원여권을 소지하게 됨

11) View Vacancy - Regional Pay and Benefits Manager, <https://fco.tal.net/vx/mobile-0/appcentre-ext/brand-2/candidate/so/pm/4/pl/1/opp/1952-Regional-Pay-and-Benefits-Manager/en-GB>(검색일: 2018년9월16일)

12) Diplomatic Service Regulations, <https://www.whatdotheyknow.com/request/120182/response/300534/attach/2/DSR.pdf>(검색일: 2018년9월16일)

13) Local Staff Charter, https://static.wcn.co.uk/company/fco/ls_charter.pdf(검색일: 2018년9월16일)

14) 使馆人员的构成, <https://www.mfa.gov.cn/ce/cggb/chn/ztlm/gtbfyrth/dsghwjg/t214410.htm>

- ‘행정기술원’은 재외공관의 행정 및 기술분야를 담당함
 - 서기, 주사, 통역원, 타자원, 회계원 등이 이에 해당함
- ‘복무원’은 재외공관의 서비스분야를 담당함
 - 운전사, 접수원, 노무원 등이 이에 해당함
- ‘개인고용인’은 공관 직원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들을 의미하며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공안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음
 - 청소부, 기사, 고용인, 보모 등이 이에 해당함
 - ※ 영국의 경우는 여권을 구분하지 않고, 여권에 소지자의 직함과 신분을 명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행정직원 초빙 및 선발

- 행정기술원, 복무원 등은 재외공관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초빙공고를 내거나 혹은 중개기관의 공고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예를 들어, 대부분의 재외공관은 북경외교관복무국(北京外交人员服务局, Beijing Diplomatic Service)을 통해 인원을 초빙해서 선발하고 있음

다. 행정직원 대우

- 행정직원의 임기는 직종, 주재국, 재외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¹⁵⁾
 - 구체적으로는 기술요원 임기 2~3년, 정보통신원 및 접수원 임기 2년, 특수지국가 및 소규모 공관에서의 임기 2년임
 - 그밖에 일반적으로 임기는 3년임
 - 일반적으로 임기는 재연장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국내 절차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임기 만료 후 다른 공관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임기 만료 후 공관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임기는 2년을 초과할

15) 外交部、财政部、人事部关于印发《驻外使领馆常驻人员任期年限、休假的规定》的通知(1994.6.25.)

수 없음

- 행정직원의 급여는 경력 및 직급에 따라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음¹⁶⁾
 - 중급기술보유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격 4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기술계열’ 급여 5급 대우를 받게 되며, 4년이 안된 경우 6급 대우를 받음
 - 따라서 5급 대우는 월 505달러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자격증 보유 3년 이상 4년 이하의 6급 대우는 475달러를 지급받음
 - ※ 재외공관 직원의 급여는 외교관의 경우 ‘외교계열’, 행정기술원과 복무원의 경우 ‘기술계열’로 구분해서 지급되고 있음
 - ※ 한편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대사의 경우 월 1,110달러를 지급받음
 - 특정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역우, 근무 경력 26년 이상이면 ‘기술계열’ 3급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 받게 되며, 근무기간 10년 이하인 경우 7급에 해당함
- 재외공관 행정직원은 근무지와 배우자 및 자녀 동반에 따라 생활수당을 지급받음¹⁷⁾
 - 생활수당은 일인당 매월 110달러를 지급받으며, 급식수당으로 매월 22달러를 지급 받음
 - 그밖에도 특수지근무수당, 전쟁수당 등을 지급받음
 - 한편 18세가 안 되는 미성년자녀의 동반도 허가하고 있음

4) 일본

가. 재외공관의 직원구성

- 일본 재외공관의 직원은 외무성에 소속되어 있는 ‘외무공무원’, 정치·경제·문화 등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조사원’, 공무출장자 등 요인방문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파견원’, ‘관저요리사’와 현지 채용직원, 타 부처에서 파견되는 주재관, 의무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16) 财政部 人事部 外交部印发《驻外使领馆 工作人员工资制度改革方案》的通知(1994.7.8.), 人事部, 财政部. 外交部关于印发《驻外使领馆工作人员工资制度改革实施细则》的通知(1994.10.22.)

17) 财政部、人事部、外交部关于深化驻外使领馆工作人员工资和生活待遇制度改革的通知(2001.12.19)

[표 5] 재외공관의 직원 구성

구분		설명
외무공무원		외무성 소속의 국가공무원
	타 부처 파견 주재관	타 성청으로부터 통상 2-3년 파견되어 있는 외무공무원
	파견 의무관	직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사자격을 가진 외무공무원
전문조사원		통상 2년의 임기로 해당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재외공관의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파견원	일반파견원	공무출장자, 요인방문 등에 관한 편의제공 및 서무 활동을 행하는 자
	기술파견원	건축, 전기, 기계 등 전문지식 등 기술을 가지는 자
관저요리사		관저 요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관장 혹은 외무성이 위탁한 요리사
현지직원		외무공무원이 행하는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고용한 비서, 수납, 운전사, 청소, 방호 담당 직원

출처: 会計検査院 国会からの検査要請事項に関する報告 (検査要請)

<http://report.jbaudit.go.jp/org/h22/YOUSEI/2010-h22-7001-0.htm>

- ‘행정직원’을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로 정의할 때, 일본 재외공관 직원 중 행정직원은 전문조사원, 파견원, 관저요리사, 현지직원에 해당함.
- 전문조사원, 파견원, 관저요리사는 일본에서 선발하여 파견하며, 현지 직원은 현지 공관 채용임

나. 일본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운영 방식

- 외무성은 전문조사원, 파견원, 관저요리사 등 행정직원의 선발, 파견을 (사)국제교류서비스협회(国際交流サービス協会)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파견 행정직원은 「노동기준법」, 「노동자파견법」에 의거하여 (사)국제교류서비스협회의 외무성 파견 직원이며, 근무지는 재외공관에 해당함
 - 공관 직원에 해당하나, 공무원은 아님
 - ※ (사)국제교류서비스협회는 1970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본부는 외무성 구내에 있으며, 외무성의 위탁업무를 담당함
 - 외국인 초청지원(정부 및 정부기관의 외국인 초청인사의 의전, 통역 등), 해외여행업무(공무원의 부임, 출장 등), 국제연수업무(외국인기술연수원에 의한 일본사정연수), 인재파견업무(전문조사원, 파견원 관련업무) 등임

다. 행정직원별 운영 방식

□ 전문조사원¹⁸⁾

- 전문조사원은 파견 공관원의 일원으로서 외교활동에 임하며, 파견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관한 조사, 연구에 종사하며 현지 공관업무를 보조함
 - 2018년 4월 1일 현재 163개 공관 199명(남성 89명, 여성 110명)이 근무 중임
- 근무조건
 - 임기: 원칙 2년임.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1년 갱신 합계 2년
 - 근무: 1일 7시간 45분 근무, 주2일 휴일; 유급휴가 1년 최대 20일, 하계휴가 3일
 - 급여: 파견지에 따라 상이하나, 월급여 33만엔에서 65만엔(주거비 규정액 및 상여금 별도지급)
- 선발방식
 - 1차 시험: 필기시험(외국어필기, 전문분야에 관한 논문)
 - 2차 시험: 면접심사 및 외국어회화
- 응모자격:
 - 대학원 석사수료 이상(포스트에 따라서는 석사 재학생도 지원가능)
 - 대학졸업 후 3년 이상 유관부문 업무를 한 경우 석사수료로 간주함
 - 업무수행에 적합한 어학실력

□ 파견원

- 재외공관 파견원은 재외공관에 원칙 2년 임기로 파견되며, 일반직과 기술직으로 나뉨
 - (사)국제교류서비스협회의 위탁직원으로서 채용되어 각 재외공관에 파견됨
- 일반직 파견원

18) 平成30年「外務省在外公館専門調査員説明会資料」

- 업무: 공관 사무보좌 및 공무출장자의 일정, 숙박 예약 등을 지원
 - 2018년 9월 1일 기준 212광관, 277명이 파견활동 중임
- 근무조건: 원칙 2년임.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1년 갱신 합계 2년; 1일 7시간 45분 근무
- 급여: 25만엔-39만엔(파견 공관에 따라 상이)
- 선발방식
 - 응모자격: 일본국적자(이중국적가능), 고교졸업이상, 운전면허보유자
 - 1차 시험: 외국어필기, 일반상식, 일본어작문, 적성검사
 - 2차 시험: 일본어 면접 및 외국어 회화
- 기술직 파견원
 - 업무: 재외공관 시설(관저 및 사무소)의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
 - 급여: (사)국제교류서비스협회가 정한 보수, 주거비, 항공비용, 사회보험 등 제공
 - 근무조건: 원칙 2년임.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공관사정에 따라 단축될 수 있음
 - 채용조건: 일본국적자, 고교졸업이상의 자, 운전면허보유자, 관련기술자격을 가지고 수년간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채용절차: 응모서류를 (사)국제교류서비스협회에 제출하여 기술파견원으로 등록되면, 파견원 모집공관 공고를 메일로 안내함. 희망 공관의 경우 메일로 응모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해 채용
- 공관요리사
 - 공관요리사는 공관장이 채용하는 직원으로서 계약 조건 등은 각기 상이함
 - 임기는 공관장의 임기에 준하며 통상 2-3년임
 - 채용과정
 - 자격: 조리사 면허소지자 혹은 조리 종사경력 5년 이상

- 제출서류: 구직등록표, 추천서
- 채용절차: 응모서류를 (사)국제교류서비스협회에 제출하여 구직자로 등록되면, 협회로 요리사 소개 의뢰가 있을 경우 공관장에게 조건에 맞는 등록자를 추천함. 공관장과 구직자 면접 후 개별 결정됨

3. 한국 재외공관 행정직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근 외교부는 기본급, 의료복지, 신분안정 등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여전히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용 및 관리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재외공관에 따른 직종별 정원배치를 보면, 재외 공간 규모나 국가별 중요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행정직원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첨부 파일 참조)
 - 외교부「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 지침」제4조는 행정직원의 정원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직원의 배치와 직종을 해당 공관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재외공관의 업무실태 조사를 통해 행정직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준과 원칙에 의한 행정직원 배치 및 관리가 필요함
 - ‘행정직원 정원표’ 등 정원 관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2015년 12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41개 사무소에 행정직원 정원을 262명으로 하는 ‘행정직원 정원표’에 따라 정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참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를 토대로 적정한 예산배분을 통해 재외공관 행정직원에게 대해 임금·복지 등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적별 현황(2017년)

(단위 : 명)

연번	공관명	합계		
		소계	한국인	외국인
계	183개	3,196	1,423	1,773
1	주 가나 대사관	17	5	12
2	주 가봉 대사관	13	4	9
3	주 고베 총영사관	10	10	0
4	주 과테말라 대사관	14	5	9
5	주 광저우 총영사관	40	13	27
6	주 교황청 대사관	8	3	5
7	주 그리스 대사관	11	5	6
8	주 나고야 총영사관	11	11	0
9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	17	5	12
10	주 남아공 대사관	21	10	11
11	주 네덜란드 대사관	15	9	6
12	주 네팔 대사관	25	5	20
13	주 노르웨이 대사관	11	5	6
14	주 뉴욕 총영사관	31	24	7
15	주 뉴질랜드 대사관	11	8	3
16	주 니가타 총영사관	8	8	0
17	주 니카라과 대사관	12	3	9
18	주 다렌 출장소	19	2	17
19	주 델러스 출장소	7	7	0
20	주 덴마크 대사관	11	7	4
21	주 도미니카 대사관	11	5	6
22	주 독일 대사관	26	13	13
23	주 동티모르 대사관	11	2	9
24	주 두바이 총영사관	11	4	7
25	주 라고스 분관	7	2	5
26	주 라스팔마스 분관	6	3	3
27	주 라오스 대사관	15	5	10
28	주 라트비아리가 분관	5	1	4
29	주 러시아 대사관	53	18	35
30	주 레바논 대사관	11	2	9
31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30	25	5
32	주 루마니아 대사관	13	5	8
33	주 르완다 대사관	12	4	8
34	주 리비아 대사관	16	5	11
35	주 마다가스카르 대사관	7	4	3
36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21	7	14

연번	공관명	합계		
		소계	한국인	외국인
37	주 멕시코 대사관	21	6	15
38	주 멜번 분관	8	7	1
39	주 모로코 대사관	15	5	10
40	주 모잠비크 대사관	11	4	7
41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12	8	4
42	주 몽골 대사관	24	7	17
43	주 뭄바이 총영사관	15	4	11
44	주 미국 대사관	62	46	16
45	주 미얀마 대사관	31	7	24
46	주 밀라노 총영사관	9	7	2
47	주 바레인 대사관	10	5	5
48	주 방글라데시 대사관	20	6	14
49	주 밴쿠버 총영사관	13	6	7
50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	11	4	7
51	주 베트남 대사관	34	10	24
52	주 벨기에 대사관	24	11	13
53	주 벨라루스 대사관	13	5	8
54	주 보스턴 총영사관	9	9	0
55	주 본 분관	12	7	5
56	주 볼리비아 대사관	13	4	9
57	주 불가리아 대사관	14	5	9
58	주 브라질 대사관	22	8	14
59	주 브루나이 대사관	11	3	8
60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16	6	10
61	주 사우디 대사관	19	6	13
62	주 삿포로 총영사관	8	8	0
63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12	5	7
64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16	11	5
65	주 상하이 총영사관	55	14	41
66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15	14	1
67	주 선양 총영사관	86	15	71
68	주 세네갈 대사관	14	5	9
69	주 세르비아 대사관	13	5	8
70	주 세부 분관	9	3	6
71	주 센다이 총영사관	9	7	2
72	주 수단 대사관	17	4	13
73	주 스리랑카 대사관	19	4	15
74	주 스웨덴 대사관	13	8	5
75	주 스위스 대사관	10	8	2
76	주 스페인 대사관	18	10	8
77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	11	6	5

연번	공관명	합계		
		소계	한국인	외국인
78	주 시드니 총영사관	17	12	5
79	주 시안 총영사관	21	7	14
80	주 시애틀 총영사관	12	10	2
81	주 시카고 총영사관	15	14	1
82	주 싱가포르 대사관	21	12	9
83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19	7	12
84	주 아르빌 분관	4	1	3
85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18	8	10
86	주 아세안 대표부	10	5	5
87	주 아일랜드 대사관	12	6	6
88	주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15	5	10
89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14	3	11
90	주 알마티 총영사관	12	4	8
91	주 알제리 대사관	22	4	18
92	주 앙골라 대사관	13	6	7
93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13	12	1
94	주 앵커리지 출장소	4	3	1
95	주 에콰도르 대사관	13	4	9
96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	23	5	18
97	주 엘살바도르 대사관	13	4	9
98	주 영국 대사관	27	22	5
99	주 예멘 대사관	13	5	8
100	주 오만 대사관	10	3	7
101	주 오사카 총영사관	27	27	0
102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22	9	13
103	주 오이시디 대표부	22	17	5
104	주 오클랜드 분관	10	10	0
105	주 온두라스 대사관	11	4	7
106	주 요르단 대사관	13	6	7
107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11	11	0
108	주 우간다 대사관	11	4	7
109	주 우루과이 대사관	11	4	7
110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29	7	22
111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	17	5	12
112	주 우한 총영사관	18	5	13
113	주 유네스코 대표부	9	7	2
114	주 유엔 대표부	30	19	11
115	주 유주노사할린스크 출장소	5	2	3
116	주 이라크 대사관	15	6	9
117	주 이란 대사관	15	5	10
118	주 이르쿠츠크총영사관	8	4	4

연번	공관명	합계		
		소계	한국인	외국인
119	주 이스라엘 대사관	14	5	9
120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	13	6	7
121	주 이집트 대사관	23	6	17
122	주 이탈리아 대사관	19	7	12
123	주 인도 대사관	34	10	24
124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44	13	31
125	주 일본 대사관	78	78	0
126	주 자메이카 대사관	6	2	4
127	주 적도기니말라보분관	4	2	2
128	주 제네바 대표부	26	12	14
129	주 쯏다 총영사관	10	4	6
130	주 조지아 트빌리시분관	5	2	3
131	주 중국 대사관	108	48	60
132	주 짐바브웨 대사관	13	4	9
133	주 청두 총영사관	19	7	12
134	주 체코 대사관	16	7	9
135	주 첸나이 총영사관	14	6	8
136	주 칠레 대사관	17	6	11
137	주 칭다오 총영사관	57	16	41
138	주 카라치 분관	11	3	8
139	주 카메룬 대사관	15	4	11
140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15	5	10
141	주 카타르 대사관	13	5	8
142	주 캄보디아 대사관	16	8	8
143	주 캐나다 대사관	14	9	5
144	주 케냐 대사관	16	5	11
145	주 코스타리카 대사관	12	4	8
146	주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17	4	13
147	주 콜롬비아 대사관	18	3	15
148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21	5	16
149	주 쿠웨이트 대사관	14	3	11
150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	9	4	5
151	주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14	4	10
152	주 타지키스탄 대사관	9	2	7
153	주 탄자니아 대사관	18	5	13
154	주 태국 대사관	30	11	19
155	주 터키 대사관	14	6	8
156	주 토론토 총영사관	14	5	9
157	주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14	3	11
158	주 튀니지 대사관	12	5	7
159	주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관	11	4	7

연번	공관명	합계		
		소계	한국인	외국인
160	주 파나마 대사관	12	4	8
161	주 파라과이 대사관	14	6	8
162	주 파키스탄 대사관	23	4	19
163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12	5	7
164	주 페루 대사관	18	3	15
165	주 포르투갈 대사관	15	6	9
166	주 폴란드 대사관	18	5	13
167	주 프랑스 대사관	23	16	7
168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15	9	6
169	주 피지 대사관	12	5	7
170	주 핀란드 대사관	11	6	5
171	주 필리핀 대사관	46	15	31
172	주 하갓냐 출장소	5	4	1
173	주 함부르크 총영사관	9	4	5
174	주 헝가리 대사관	16	7	9
175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10	8	2
176	주 호주 대사관	16	13	3
177	주 호치민 총영사관	33	9	24
178	주 홍콩 총영사관	25	12	13
179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	13	13	0
180	주 휴스턴 총영사관	10	9	1
181	주 히로시마 총영사관	10	10	0
182	주 팔레스타인 사무소	4	2	2
183	주 시엠립 분관	7	3	4
-	바르셀로나 등 신설공관 배치 예정	6	6	0

재외공관 행정직원 직종별 현황(2017년)

(단위 : 명)

연번	공관명	선임연구원	전문직	일반직	합계
1	주 가나 대사관	0	1	16	17
2	주 가봉 대사관	0	0	13	13
3	주 고베 총영사관	0	0	10	10
4	주 과테말라 대사관	0	1	13	14
5	주 광저우 총영사관	0	1	39	40
6	주 교황청 대사관	0	0	8	8
7	주 그리스 대사관	0	1	10	11
8	주 나고야 총영사관	0	1	10	11
9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	0	1	16	17
10	주 남아공 대사관	1	1	19	21
11	주 네덜란드 대사관	0	3	12	15
12	주 네팔 대사관	0	0	25	25
13	주 노르웨이 대사관	0	1	10	11
14	주 뉴욕 총영사관	0	2	29	31
15	주 뉴질랜드 대사관	0	2	9	11
16	주 니가타 총영사관	1	1	6	8
17	주 니카라과 대사관	0	1	11	12
18	주 다렌 출장소	0	0	19	19
19	주 델러스 출장소	0	0	7	7
20	주 덴마크 대사관	0	1	10	11
21	주 도미니카 대사관	0	2	9	11
22	주 독일 대사관	0	4	22	26
23	주 동티모르 대사관	0	0	11	11
24	주 두바이 총영사관	0	0	11	11
25	주 라고스 분관	0	0	7	7
26	주 라스팔마스 분관	0	0	6	6
27	주 라오스 대사관	1	1	13	15
28	주 라트비아리가 분관	0	0	5	5
29	주 러시아 대사관	1	2	50	53
30	주 레바논 대사관	0	0	11	11
31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	0	29	30
32	주 루마니아 대사관	0	1	12	13
33	주 르완다 대사관	0	1	11	12
34	주 리비아 대사관	0	1	15	16
35	주 마다가스카르 대사관	0	1	6	7
36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1	1	19	21
37	주 멕시코 대사관	0	0	21	21
38	주 멜번 분관	0	1	7	8
39	주 모로코 대사관	0	1	14	15

연번	공관명	선임연구원	전문직	일반직	합계
40	주 모잠비크 대사관	0	1	10	11
41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0	1	11	12
42	주 몽골 대사관	0	1	23	24
43	주 몸바이 총영사관	0	0	15	15
44	주 미국 대사관	2	3	57	62
45	주 미얀마 대사관	0	2	29	31
46	주 밀라노 총영사관	0	1	8	9
47	주 바레인 대사관	0	1	9	10
48	주 방글라데시 대사관	0	1	19	20
49	주 밴쿠버 총영사관	0	1	12	13
50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	0	1	10	11
51	주 베트남 대사관	0	2	32	34
52	주 벨기에 대사관	0	1	23	24
53	주 벨라루스 대사관	0	2	11	13
54	주 보스턴 총영사관	0	1	8	9
55	주 본 분관	0	0	12	12
56	주 볼리비아 대사관	0	0	13	13
57	주 불가리아 대사관	0	1	13	14
58	주 브라질 대사관	1	3	18	22
59	주 브루나이 대사관	0	0	11	11
60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1	0	15	16
61	주 사우디 대사관	1	1	17	19
62	주 삿포로 총영사관	0	1	7	8
63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0	1	11	12
64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0	1	15	16
65	주 상하이 총영사관	0	1	54	55
66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0	1	14	15
67	주 선양 총영사관	0	2	84	86
68	주 세네갈 대사관	0	1	13	14
69	주 세르비아 대사관	0	2	11	13
70	주 세부 분관	0	0	9	9
71	주 샌다이 총영사관	0	0	9	9
72	주 수단 대사관	0	1	16	17
73	주 스리랑카 대사관	0	1	18	19
74	주 스웨덴 대사관	0	2	11	13
75	주 스위스 대사관	0	1	9	10
76	주 스페인 대사관	1	0	17	18
77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	0	1	10	11
78	주 시드니 총영사관	0	1	16	17
79	주 시안 총영사관	1	1	19	21
80	주 시애틀 총영사관	0	1	11	12
81	주 시카고 총영사관	0	1	14	15

연번	공관명	선임연구원	전문직	일반직	합계
82	주 싱가포르 대사관	1	2	18	21
83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0	1	18	19
84	주 아르빌 분관	0	0	4	4
85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0	1	17	18
86	주 아세안 대표부	2	1	7	10
87	주 아일랜드 대사관	0	1	11	12
88	주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0	1	14	15
89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0	0	14	14
90	주 알마티 총영사관	0	1	11	12
91	주 알제리 대사관	0	2	20	22
92	주 앙골라 대사관	0	2	11	13
93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0	1	12	13
94	주 앵커리지 출장소	0	0	4	4
95	주 에콰도르 대사관	0	2	11	13
96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	0	1	22	23
97	주 엘살바도르 대사관	0	1	12	13
98	주 영국 대사관	1	2	24	27
99	주 예멘 대사관	1	0	12	13
100	주 오만 대사관	0	0	10	10
101	주 오사카 총영사관	0	2	25	27
102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1	1	20	22
103	주 오이시디 대표부	1	1	20	22
104	주 오클랜드 분관	0	1	9	10
105	주 온두라스 대사관	1	1	9	11
106	주 요르단 대사관	1	2	10	13
107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0	2	9	11
108	주 우간다 대사관	0	1	10	11
109	주 우루과이 대사관	0	1	10	11
110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0	1	28	29
111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	0	3	14	17
112	주 우한 총영사관	0	2	16	18
113	주 유네스코 대표부	0	2	7	9
114	주 유엔 대표부	1	2	27	30
115	주 유주노사할린 출장소	0	0	5	5
116	주 이라크 대사관	0	0	15	15
117	주 이란 대사관	1	0	14	15
118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관	0	2	6	8
119	주 이스라엘 대사관	1	1	12	14
120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	0	0	13	13
121	주 이집트 대사관	1	1	21	23
122	주 이탈리아 대사관	0	1	18	19
123	주 인도 대사관	2	2	30	34

연번	공관명	선임연구원	전문직	일반직	합계
124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1	1	42	44
125	주 일본 대사관	1	4	73	78
126	주 자메이카 대사관	1	1	4	6
127	주 적도기니말라보 분관	0	0	4	4
128	주 제네바 대표부	0	2	24	26
129	주 쟈다 총영사관	0	1	9	10
130	주 조지아트빌리시 분관	0	0	5	5
131	주 중국 대사관	2	4	102	108
132	주 짐바브웨 대사관	0	1	12	13
133	주 청투 총영사관	0	2	17	19
134	주 체코 대사관	1	1	14	16
135	주 첸나이 총영사관	0	1	13	14
136	주 칠레 대사관	0	1	16	17
137	주 칭다오 총영사관	1	1	55	57
138	주 카라치 분관	0	0	11	11
139	주 카메룬 대사관	0	1	14	15
140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0	2	13	15
141	주 카타르 대사관	0	1	12	13
142	주 캄보디아 대사관	0	1	15	16
143	주 캐나다 대사관	1	1	12	14
144	주 케냐 대사관	1	0	15	16
145	주 코스타리카 대사관	0	1	11	12
146	주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0	1	16	17
147	주 콜롬비아 대사관	0	1	17	18
148	주 콩고 대사관	0	2	19	21
149	주 쿠웨이트 대사관	0	1	13	14
150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	0	0	9	9
151	주 키르기즈 대사관	0	3	11	14
152	주 타지키스탄 대사관	0	1	8	9
153	주 탄자니아 대사관	0	1	17	18
154	주 태국 대사관	1	2	27	30
155	주 터키 대사관	0	1	13	14
156	주 토론토 총영사관	0	0	14	14
157	주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0	1	13	14
158	주 튀니지 대사관	0	2	10	12
159	주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관	1	1	9	11
160	주 파나마 대사관	0	2	10	12
161	주 파라과이 대사관	0	0	14	14
162	주 파키스탄 대사관	0	2	21	23
163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0	1	11	12
164	주 페루 대사관	0	1	17	18
165	주 포르투갈 대사관	0	2	13	15

연번	공관명	선임연구원	전문직	일반직	합계
166	주 폴란드 대사관	1	1	16	18
167	주 프랑스 대사관	0	1	22	23
168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0	1	14	15
169	주 피지 대사관	0	1	11	12
170	주 핀란드 대사관	0	2	9	11
171	주 필리핀 대사관	1	1	44	46
172	주 하가냐 출장소	0	0	5	5
173	주 함부르크 총영사관	0	1	8	9
174	주 헝가리 대사관	0	2	14	16
175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0	1	9	10
176	주 호주 대사관	0	2	14	16
177	주 호치민 총영사관	0	0	33	33
178	주 홍콩 총영사관	1	1	23	25
179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	0	0	13	13
180	주 휴스턴 총영사관	0	1	9	10
181	주 히로시마 총영사관	1	1	8	10
182	주 팔레스타인 대표부	0	0	4	4
183	주 시엠립 분관	0	0	7	7
-	바르셀로나 등 신설공관 배치 예정	0	2	4	6
합계		43	196	2957	3196